- 최종보고서-

2012. 1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정 재 왈

연구진 구성

구 분	성 명	현 직
책임연구원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혜진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동연구원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이선옥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지원부 파트장
연구보조원	송정배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Ms in accounting

목차

제1	장 서	론		1
1.	. 연구의] 배경	경 및 목적	················· 1
2.	. 연구의	님 범위	위 및 방법	3
제2	장 기업	널회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5
1.	. 재무호	<u></u> 고의	목적	6
2.	. 유용한	한 재두	무정보의 질적 특성	7
3.	. 재무조]표의	요소	8
제3	장 문화	시설	설의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 	16
1.	. 문화시]설에	대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필요성	16
2.	. 문화시]설의	정의와 특성	18
제4	장 문화	시설	설의 회계처리 현황	23
1.	. 우리니	라라 등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23
2.	. 외국	문화시	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49

3. 국내외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요약	·················· 71
제5장 문화시설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	73
1. 문화시설의 회계처리기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73
2. 문화시설 회계처리기준(안)	91
제6장 결 론	116

제¹장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여러 이해관계자 및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적정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적합한 별도 회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나아가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재정운용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생성된 회계정보는 문화시설 관련 정책에 이용될 것이며, 기부금, 지원금 관리 등의 재원조성및 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 국내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증대에 따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증가
- 문화예술 분야에서 투자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재무 및 회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회계처리가 미숙하여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이 미약
- 예술 활동은 일반적인 기업경영활동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활동의 의사소통도구로서 회계기능 역시 일반 기업이나 다른 비영리단체 회계와는 다른 독창적인 특성을 보유
- 현대사회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정보의 수요증가는 문화예술영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이해관계자는 더욱 다양해지

고 복잡해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안팎의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해관계 자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영역 전반에서 예술의 공공성과 상업성,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을 떠나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영역에서 재무정보는 이러한 수요증가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재무정보의 작성 및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문화시설 운영단체가 재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회계처리가 미숙하여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이 미약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영역의 이해관계자 및 정보이용자들이 적정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사실이다.

- 문화시설 운영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며, 이들 이해관계자는 저마다의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해당 단체의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정부예산회계제도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회계제도를 문화예술조직이 사용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처리 사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업종의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업종별 특수성에 맞게 별도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 운영단체가 문화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업종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여러 이해관계자 및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적정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음은 물론이다.
- ◎ 한편 한국회계기준원(구 한국회계연구원)의 제4호 연구보고서 「비영리조직의 재

무보고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발표 된 바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단체의 회계처리 지 침을 제시한 의도는 좋지만 비영리조직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적인 사항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미 비영리조직 중에서 사학기관 및 의료법인, 사회복지재단 등의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회계준칙이 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 그러나 문화시설 운영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영역은 그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회계정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예산회계와 기업회계기준과는 구별되는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안하려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문화예술단체는 법적 형태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비영리법인 중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사학기관인 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의비영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에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조직은 문화예술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만의 특징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현재까지 기준으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 문화예술은 장르에 따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으로 구분되며, 업종에 따라 창작, 유통, 기획, 제작, 시설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로 인해 문

화예술의 다양한 장르 및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업무의 특성상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며, 회계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은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주된 범위로 설정하였다.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방법은 먼저 기존의 일반적인 회계와 관련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회계주체 및 회계정보 이용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동시에 재무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무제표의 기본전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 기업회계의 이론적 구조를 살펴봄과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무제표들의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기업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겠다.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른 회계 및 재무제표 작성 목적과 문화시설 분야 재무제표의 기본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있어서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차례 실무자 자문회의(문화시설 운영단체 회계업무 종사자, 관련 협회 종사자 등)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문화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차별점을 파악하여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회계처리 이슈를 정리하고자 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과 연구원 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기업회계와는 구별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문화시설분야 회계기준의 방향과 근거를 도출하고,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적합한 회계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 \mathbb{I} 기업회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 경제성장과 자본시장의 국제화 등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현재 변혁의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라는 단일의 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 회계기준은 영리법인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의무가 있고, 중소 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자본시장이 국제화되면서 유럽을 주축으로 하여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대변되는 금융·외환위기를 계기로 회계정보와 회계기준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서둘러 왔다. 그리하여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회계기준을 빠르게 채택하여 2011년 12월 31일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영리법인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은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하고 기타 다른 회사들도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실무적으로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않는 영리법인중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 적용하도록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된 것이다.

<영리법인이 적용하여야 할 회계기준>

구분	적용하여야 할 회계기준
주권상장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정 규모 이상1)의 영리법인	일반기업회계기준
기타 영리법인	적용하여야 할 회계기준은 없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둘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원 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됨.

●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하는데 한국회계기 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함)는 직접 회계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회계기준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무회계와 보고의 기초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회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개념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 전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한 것이다.

1. 재무보고의 목적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 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부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 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 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 (1) 지분투자에 대한 매수, 보유 또는 매도 시기를 결정한다.
- (2)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나 회계책임을 평가한다.
- (3)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밖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4) 기업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 (5) 조세 정책을 결정한다.
- (6) 분배가능한 이익과 배당을 결정한다.
- (7) 국민소득통계를 집계하고 이용한다.
- (8) 기업 활동에 대해 감독한다.

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취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 (1) 목적적합성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 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2) 충실한 표현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 (1) 비교가능성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 (2) 검증가능성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 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적시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이해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3. 재무제표의 요소

● 재무제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대분류를 재무제표의 요소로 정의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3.1 재무상태

-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이러한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 (2)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 (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가. 자산

-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이 잠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의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 능력의 형태이거나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
-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1) 자산은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개별적으로 또는 그 밖의 자산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 (2) 자산은 다른 자산과 교환된다.
- (3) 자산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 (4) 자산은 기업의 소유주에게 배분된다.
-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과 저작권도 미래에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 기업에 귀속되고 기업이 통제한 다면 자산이다.
-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을 한 경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어떤 항목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

산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나. 부채

-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일반적인 예이다.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이다.
-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을 희생하게 된다. 현재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는 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 지급
- (2) 다른 자산의 이전
- (3) 용역의 제공
- (4) 다른 의무로 대체
- (5) 부채의 자본 전환
- ◎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나 권리상실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한다.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선급 또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연간 매입액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환불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고객에 대

한 과거의 매출이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된다.

다. 자본

- 자본은 *잔여지분*으로 정의되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소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본의 배당이나 그 밖의 활용에 대한 기업능력의 법률적 또는 기타의 제한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는 배당금 수령이나 자본의 환급과 관련하여 기업의 각 지분보유자들이 상이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 서 처분하거나 계속기업을 전제로 기업전체를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총액과 우연 한 경우에만 일치한다.

3.2. 성과

-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2)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거나 다양하게 결합하면 기업의 성과를 여러 가지 측정 치로 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측정치는 포괄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총이익, 세전정상영업손익, 세후정상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다.

가. 수익

-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임대료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 수익의 발생에 따라 다양한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데,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 수취채권 및 재화나 용역이 그 예이다. 수익은 또한 부채 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이 차입금의 상환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대여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비용

●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매출원가, 급여 및 감가상각비 등이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모의 형태로 나타난다.

3.3.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 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해당 항목을 서술하는 계 정명칭과 화폐금액으로 기술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총계 에 산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 산서에 인식되어야 한다. 관련된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또는 설명 자료만으로는 그 러한 항목의 인식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

-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1)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2)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가. 자산의 인식

나. 부채의 인식

●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실무에서는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와 같이 동일한 비율로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그러한 의무도 때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채의 인식과동시에 관련 자산이나 비용도 인식된다.

다. 수익의 인식

●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재화나 용역의 매출에 따라 자산의 순증가가 인식되며 미지급채무의 면제에따라 부채의 감소가 인식된다.

라. 비용의 인식

●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종업원급여의 발생에 따라 부채의 증가가 인식되며 설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의 감소가 인식된다.

3.4.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측정은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측정기준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사용 된다. 그러한 측정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역사적 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어떤 경우(예: 법인세)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 (2) 현행원가. 자산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그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3) 실현가능(이행)가치. 자산은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채는 이행가치로 평가하는 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4) *현재가치*.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 를 상환할 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측정 기준과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통상 역사적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여 저가로 평가되고, 시장 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되기도 하며 연금부채는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일 부 기업은 비화폐성자산에 대한 가격변동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적 원가 모형 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행원가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 $\mathbf{3}$ 장 \mathbf{I} 문화시설의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

1. 문화시설에 대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필요성

- 문화예술계 안팎의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영역 전반에서 예술의 공공성과 상업성,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을 떠나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영역에서 재무정보는 이러한 수요증가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재무정보의 작성 및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재무 및 회계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회계처리가 미숙하여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이 미약한 편이다.
-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운영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며, 이들 이해관계자는 저마다의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해당단체의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출연 및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예산회계의 적용을 요구받게 되며,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서 출연 및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적용을 요구받게 된다. 일관되고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부재함에따라 문화시설 운영단체 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간 간 비교가능성도 떨어져 유용한 회계정보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예산회계제도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비영리 성격의 문화예술영역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처리 사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업종의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업종별 특수성에 맞게 별도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 운영단체가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 영역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업종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여러 이해관계자 및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적정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음은 물론이다.
- 한편 한국회계기준원(구 한국회계연구원)의 제4호 연구보고서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발표된 바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단체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시한 의도는 좋지만 비영리조직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적용 가능한 원칙적인 사항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미 비영리조직 중에서 사학기관및 의료법인, 사회복지재단 등의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별도의 회계준칙이 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 그러나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 등 문화예술영역은 그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회계정보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 따라서 정부예산회계와 기업회계기준과는 구별되는 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을 담아 낼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은 장르에 따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으로 구분되며, 업종에 따라 창작, 유통, 기획, 제작, 시설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 및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는 관리 정도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

고 회계인력이 따로 있지도 않은 곳도 수없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타 문화예술단체에 비해 비교적 조직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 고,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의 범위가 문화시설 운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 업무의 특성상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여 회계기준 적용 가능 성이 높은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주된 범위 로 설정하였다.

2. 문화시설의 정의와 특성

-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항)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문화시설은 기능에 따라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로 분류된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시설	소분류	내 용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 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전시시설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고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 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그밖의 문화시설		기타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 는 시설

-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시설 중, 본 연구는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문화보급·전수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연장, 공연연습장, 전시설 운영을 핵심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회계기준 활용 범위로 가능할 것이다. 단, 기능상으로 상이한 도서관, 체육, 복지시설 등은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 공연시설:「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즉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공연시설의 범주에는 공연장과 공연연습장이 모두 포함된다.
- 「공연법」제3장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공연장의 경우에도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공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공연시설 설립주체는 '2010 공연예술 실태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09 년 기준 총 772개 공연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기초) 설립 공연시설이 272개로 전체의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개인 설립 시설이 160개(20.7%), 상법인72개(9.3%), 교육기관 50개(6.5%)로 나타났다.
- 공연시설 운영주체는 총 772개 공연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기초) 운영 공연시설이 189개로 전체의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개인 운영 시설이 161개 (20.9%), 상법인 72개(9.3%), 공기업과 교육기관이 각각 52개(6.7%) 순으로 나타났다.
- 공연시설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416개로 전체 시설의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공공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은 281개로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에서 설립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6개(8.6%), 민간에서 설립하여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개(0.1%)로 나타났다.
- 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 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 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설립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분류된다. 한국박물관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총 618개 박물관중 국립박물관 23개(3.7%), 공립박물관 129개(20.9%), 사립박물관 348개(56.3%), 대학박물관 118개(19.1%)로 운영되고 있다.2 한편 「2010 미술시장 실태조사(예술경

영지원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총 160개 미술관 중, 국립미술관 1개(0.06%), 공립미술관 37개(23.1%), 사립미술관 117개(73.1%), 대학미술관 5개(3.1%)로 나타났다. 박물관과 미술관 모두 공공에 비해 민간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 또한 제8조에 따라,「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²⁾ http://www.museum.or.kr/

제 4 장 ▮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1. 우리나라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1.1. 비영리조직 회계처리

- 비영리조직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영리조직과는 설립절차, 자산의 내역, 이해관계자가 다르며 수익의 개념이나 내용 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리조직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기 준이 비영리조직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조직 중 사 학기관을 제외하고는 회계처리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학기관은 1969년에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6년 8월 개정)에 의해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식부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결산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1981년에 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1999년 1월 개정)에 의해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는 달리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거 1988년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였으며, 현행 규정은 2005년 7월에 개정되었다. 이 규칙은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복식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시설회계는 단식회계로 되어 있으나, 법인회계의 경우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단식회계를 허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단식회계를 선호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기타 명세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 병원회계준칙은 1981년 대한병원협회에 의해 채택되어 1990년에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았고 기업회계기준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회계 준칙은 1998년 10월에 폐지되었고, 2003년 9월에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제정되었다.
- 한편, 사학기관·병원·사회복지법인 이외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습적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 이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복 식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비영리조직에 적합한 재무보고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시설 운영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서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지침 서3)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동 지침서는 2003년 3월에 한국회계기준원(구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침서로서 2000년 9월 발표된 한국회계기준원(구 한국회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제4호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작성기준'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이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지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것으로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권한에 근거하여 제정·공표하는기준서가 아니라, 비영리조직의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회계연구원장이 제정·발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이 이 지침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 두 개의 지침서로 이루어져 있다.

^{3)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_ ,2003.3, 한국회계연구원

⁴⁾ 이 지침서는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가능한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지침서 1.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영리조직의 재무제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데목적이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조직전체에 대한 재무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비영리조직은 조직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성격에 따라 그 분류방법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순자산에 대해 제시된 기부자의 제약에대한 정보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① 제약이 없는 순자산,② 일시적제약이 있는 순자산,③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세 가지로 분류하여 표시한다.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수익 및 사업외수익을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여 운영성과표에 표시한다.
- 지침서 2. 비영리조직의 기부와 회비수입,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 무제표 표시
- 이 지침서는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기부와 회비수입,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비영리조직이 기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때 당해 서비스의 공정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①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비영리조직 내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
- ② 기부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 기부받은 미술작품, 문화재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 족하는 수집품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① 재무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증진을 위하여 공공 전시,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② 보호, 관리 및 보존 목적으로 보유한다.
- ③ 조직의 방침에 의해 수집품의 판매대금은 지속적으로 다른 수집품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성과표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제약의 해제에 대하여 인식한다.
- 회비수입은 회비납부규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 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비강제적인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 식하다.
- 기부금 수입과 회비수입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의 성격이 기부금과 유사한 경우는 기부를 받는 경우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 비영리조직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한다.
-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평가손익 및 처분 손익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한다.

•

1.2. 기존의 연구 소개

가. '문화예술단체의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2004.10, 한국회계연구원

- 문화예술단체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방향: 문화예술단체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먼저 문화예술단체의 재무보고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된 회계정보는 문화예술단체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단체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문화예술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며 재무보고의 목적도 정확한 기간손익계산에 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회계처리와 공시기준을 요구한다. 문화예술단체 재무제표는 기부자와 기부약정자,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의 거래처, 고객 및 회원(개인과 기업), 문화예술단체의 종업원, 정부 및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단체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와 회계기간 동안의 운영결과, 그리고 현금자산의 증감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는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살릴 수 있는 현금주의와 양자를 절충한 수정현금주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정현금주의에는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들이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등은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하고 미수금 또는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기록하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정규모이하의 소규모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입 지출을 현금주의에 의해 기록하고 금융기관 차입이나 외부재무보고를 위해서는 발생주의원칙에 의하여 조정하여 보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회계연도 말에 이루어질 이러한 조정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회계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의 기본적인 회계시스템은 수익인식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단식부

기 아닌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미국의 문화예술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기금회계는 재무제표 상 수 개의 회계주체를 한 면에 표시하는 보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전체적인 재무상태와 운 영성과의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거래를 각 기금별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는 데 따르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부 보고 목적상 통합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금별 내역은 별도의 명세표를 작성하거 나 주석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외부보고목적이 아닌 관리적 목적에 한 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확보 된 자금의 적절한 운용여하가 가장 중요한 재무보고목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예산제 도가 단체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집행실적이 현금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 상에 예산집행실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재무제표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 기금별 증감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운영계산서
- 현금흐름표
- 주기와 주석

나. '공연예술단체에 바람직한 회계기준 연구', 2004.6, 김진영

● 이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 새로운 업종별 회계준칙에 적용할 내용을 기본 재무제표 양식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대차대조표

- 공연예술단체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공연예술단체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에 따라 각 항목을 대차대조표 본문에 분류하고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본 연구에서 예시된 항목의 금액 또는 성격이 해당 공연 예술단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을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즉, 공연예술단체의 대차대조표에는 조직 전체의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과 금액을 표시해야 하며, 이들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간별비교가 용이하도록 당기 및 전기의 내용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 당해연도 이후에 공연하는 작품을 위해 당기에 소요된 비용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연수익이 발생하는 연도의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재고자산의 계정과목은 '제작중인 공연' 또는 '미성공연' 등으로 새롭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 무대장치와 의상 등은 공연제작원가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성이 분명하고 금액의 중요성이 크다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공연용자산'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산 중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당해 공연 이외의 공연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재 또는 이와 유사한 내구재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원용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감가 또는 감모된 가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그 잔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며, 차액은 공연원가로 대체한다.
- 투자자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조명장치, 음향장치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계정과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 공연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다. 개발비 성격의 비용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비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금액이 단체 규모에 비해 중요하며 개발을 통한 공연수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과 라이선스·저작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상하는 금액은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무형자산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기간 동안 이를 상각하며, 중도에 더 이상 권리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무형자산 잔액을 일시에 상각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 부채와 자본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 투자를 유 치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의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이 사용되 었다면 이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며, 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차입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예를 들어, 공연차입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손익계산서

● 공연예술단체의 손익계산서는 해당 공연예술단체의 매출, 매출원가, 영업외비용 등의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에 따라 각 항목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분류하고 표시해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시된 항목의 금액 또는 성격이 해당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을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기간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당기 및 전기의 내용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출액은 공연수익과 기타의 다른 수익을 구분하여 기재하다. 공연예술단체에서는 공연수익의 구성이 중요한 정보이므로 손익계산서에서 공연수익을 다시 세부적으 로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공연수익에는 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협찬금이나 기부금과 정부 및 지자체와 관 련기관으로부터 얻는 지원금도 포함되며 이를 각각의 항목으로 기재한다.
-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발생하는 회원수입 등은 매출에 포함시키며, 공연수익과는 별 개의 항목으로 기재한다. 회원수입은 구체적인 공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일 정기간 공연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의 주요한 사업인 공 연활동과 관련한 수익이므로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다.
- ◎ 매출워가는 매출과 대응하여, 공연원가와 기타 다른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워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공연수익은 총액과 세부 항목별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 지만 공연원가는 총액을 하나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예술단원에 대한 급여와 공연제작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는 공연원가에 포함한다.
- ◎ 공연에 대한 기획 및 홍보비는 공연원가에 포함하며, 단체 자체를 광고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 구체적인 공연과 관련 없이 단체를 대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지원금은 재무활 동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한다.

1.3.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 문화시설 운영단체는 법적 형태에 따라 '출연기관으로의 보고', '이사회 보고', '세무 신고', '지원금 정산 보고' 등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 식부기에 의한 수지계산서만을 작성하고 있는 단체도 일부 있다. 즉, 단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재무제표의 종류를 다르게 채택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적용하는 재무 제표를 기본으로 하되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다 보니 단 체마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는 곳도 있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대신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표시 하는 곳도 있으며, 또 일부는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는 곳도 있다. 엄밀히 말해서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표준계정과목이 없어 계정과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공공에서 출연된 단체의 경 우 출연기관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수익 가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수수익(부채 계 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에서 선수수익으로의 처리를 금지시 키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일어났다고 해도 재화의 수취가 완료되었거나 용역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으나 연도 중에 워인행위가 발생하여 출납폐쇄기간까지 집행될 예정인 금액을 모두 기중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재 무제표의 사례이다.

사례 1: 영리법인 공연장

● A공연장은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로서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계가 100억원을 초과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A공연장이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 므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다음은 전자공시시스 템에 공시된 최근 감사보고서이다.

재 무 상 태 표

제 40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39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A공연장 (단위 : 원)

과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자 산						
I.유동자산		6,552,134,448		6,735,546,515		
(1)당좌자산		321,695,955		661,575,092		
1.현금및현금등가물	111,806,355		160,798,891			
2.미수금	107,327,843		52,763,347			
대손충당금	(1,068,328)		(449,000)			
3.선급금	99,428,000		362,991,000			
4.선급비용	4,147,779		3,466,407			
5.부가세대급금	-		81,664,331			
6.선납세금	54,306		340,116			
(2)재고자산		6,230,438,493		6,073,971,423		
1.상품	6,227,974,698		6,062,910,829			
2.식음원재료	2,463,795		1,246,928			
3.미착품	-		9,813,666			
Ⅱ.비유동자산		25,991,162,106		4,246,989,636		
(1)유형자산(주석3,4,6)		25,944,587,614		4,104,337,344		
1.토지	22,745,530,000		870,179,048			
2.건물	3,193,979,822		3,193,979,822			
감가상각누계액	-1,457,994,582		-1,378,145,086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3.구축물	254,929,449		254,929,449	
감가상각누계액	(208,932,677)		(205,310,494)	
4.기계장치	2,967,322,501		2,967,322,501	
감가상각누계액	-2,966,636,170		-2,965,873,875	
5.차량운반구	132,270,599		37,310,509	
감가상각누계액	(84,070,012)		(30,150,711)	
6.공구와기구	5,780,617		5,780,617	
감가상각누계액	(5,760,617)		(5,760,617)	
7.비품	3,496,293,152		3,437,601,788	
감가상각누계액	-3,276,824,489		-3,029,498,347	
8.시설장치	2,667,503,525		1,417,846,466	
감가상각누계액	-1,518,803,504		(465,873,726)	
(2)무형자산(주석2,5)		40,643,334		47,973,334
1.소프트웨어	40,643,334		47,973,334	
(3)기타비유동자산		5,931,158		94,678,958
1.보증금	5,931,158		94,678,958	
자산총계		32,543,296,554		10,982,536,151
부 채				
I.유동부채		15,875,651,674		13,003,819,728
1.미지급금	83,990,667		253,296,746	
2.예수금	10,679,320		6,193,298	
3.선수금	256,900,000		207,842,880	
4.단기차입금 (주석7,8)	10,490,000,000		8,340,000,000	
5.미지급비용	40,200,014		12,996,127	
6.주임종단기채무(주석 11)	4,972,470,677		4,183,490,677	
7.부가세예수금	21,410,996		_	
표.비유동부채	21,110,330	334,442,823		405,423,366
1.임대보증금	308,680,000	55.,2,525	285,680,000	.55,125,550
2.퇴직급여충당금(주석 2,9)	25,762,823		119,743,366	

,
~

부 채 총 계		16,210,094,497		13,409,243,094
자 본				
I.자본금 (수권주식수:255,200주) (1 주당금액: 10,000원)		2,552,000,000		2,552,000,000
1.보통주자본금 (주석10)	2,552,000,000		2,552,000,000	
Ⅱ.자본잉여금		185,360,000		185,360,000
1.기타자본잉여금	185,360,000		185,360,000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875,350,952		
1.재평가이익(주석3)	21,875,350,952			
IV.결손금		8,279,508,895		5,164,066,943
1.미처리결손금	-8,279,508,895		-5,164,066,943	
자 본 총 계		16,333,202,057		-2,426,706,9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2,543,296,554		10,982,536,15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인	니다.	

- A공연장은 카페 운영에 따른 식음료 재료 등을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다.
- 2010년에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장부가액이 약 219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평가차익으로 하여 자본 계정에 계상하였다.
- 대관료수입 등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손 익 계 산 서

제 40 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 년12월 31일까지 제 39 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 년12월 31일까지

회사명: A공연장 (단위: 원)

과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매 출 액		1,319,373,143		1,366,529,693
1.임 대 료 수 입	233,005,922		484,650,467	
2.식 음 료 수 입	223,529,874		188,619,828	
3.대 관 료 수 입	794,103,030		644,113,516	
4.박 물 관 수 입	47,634,512		-	
5.부 가 판 권 수 입	-		4,931,652	
6.기 타 수 입	21,099,805		44,214,230	
Ⅱ.매 출 원 가		832,495,064		1,029,725,895
1.임대사업매출원가	487,363,861		591,451,676	
2.식음료 매출 원가	338,837,744		438,274,219	
3.기타 수입 원가	6,293,459		-	
Ⅲ.매 출 총 이 익		486,878,079		336,803,798
IV.판 매 비 와 관 리 비		2,995,242,680		2,131,988,024
1.임 원 급 여	90,417,600		93,194,680	
2.급 여	395,031,679		191,208,025	
3.상 여 금	38,521,240		24,153,948	
4.제 수 당	79,783,459		27,879,864	
5.잡 급	110,812,519		119,547,283	
6.퇴 직 급 여	29,945,720		30,320,709	
7.복 리 후 생 비	93,380,921		92,292,427	
8.여 비 교 통 비	4,831,920		6,418,340	
9.접 대 비	30,665,040		8,592,373	

4.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10.통 신	비	19,396,550		13,191,661	
11.수 도 광 일	별 비	1,445,960		224,720	
12.세 금 과 공	급 과	152,334,007		146,939,561	
13.감 가 상 길	ţ 비	1,261,753,550		650,165,881	
14.지 급 임 ㅊ	구 료	57,280,855		-	
15.수 선	비	14,578,364		114,720,000	
16.보 험	료	27,693,921		18,701,405	
17.차 량 유 지	4	19,597,154		17,827,920	
18.운 반	비	8,882,163		3,240,100	
19.교 육 훈 린	<u>년</u> 비	1,286,720		688,240	
20.도 서 인 소	H 비	45,756,160		6,922,354	
21.포 장	비	3,655,000		-	
22.사 무 용 품	등 비	2,137,326		995,048	
23.소 모 품	비	67,742,994		35,990,828	
24.지 급 수 수	- 료	316,618,204		374,964,053	
25.광 고 선 전	<u>년</u> 비	8,653,273		38,938,000	
26.대 손 상 각	¦ 비	619,328		-	
27.건 물 관 리	. н	52,261,026		-	
28.무형 자산 상각	¦비	10,330,000		3,426,666	
29.샘 플	비	1,439,949		394,250	
30.출 장	비	23,398,979		30,160,488	
31.리 스	료	-		80,491,200	
32.협 회	비	198,000		398,000	
33.행 사	비	20,413,099		-	
34.잡	비	4,380,000		-	
V.영 업 손	: 실		2,508,364,601		1,795,184,226
VI.영 업 외	수 익		55,197,202		31,246,514
1.이 자 수	익	401,907		2,474,794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2.대손충당금환입액	-		2,433,062	
3.수 입 수 수 료	-		2,000,000	
4.잡 이 익	54,795,295		24,338,658	
VII.영 업 외 비 용		662,274,553		607,038,560
1.이 자 비 용	625,072,243		439,979,080	
2.유형자산처분손실	-		163,624,345	
3.유가증권처분손실	3,134,522		-	
4.잡 손 실	34,067,788		3,435,135	
VII.법인세차감전순손실		3,115,441,952		2,370,976,272
IX.법 인 세 등				-
X.당 기 순 손 실		3,115,441,952		2,370,976,27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A공연장은 임대, 공연장 대관, 까페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박물관 개관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박물관수입도 발생하고 있다.
- 주요 매출에 대응이 되는 원가를 구분하여 매출원가로 표시하고 있다.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제40(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제39(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12월 31일까지
처리확정일	2011년 03월 31일	처리확정일	2010년 03월 31일
회사명 : A공연장			(단위 : 원)
과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미 처 리 결 손 금	-8,279,508,8	395	-5,164,066,943

	ر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164,066,943		2,793,090,671	
2.당 기 순 손 실	3,115,441,952		2,370,976,272	
П.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皿. 결 손 금 처 리		-		-
IV.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279,508,895		-5,164,066,94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A공연장은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 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자 본 변 동 표

제 40 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 년12월 31일까지 제 39 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 년12월 31일까지

회사명: A공연장 (단위:원)

	0 2 0				(211 · 27
과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09.1.31 (전기초)	2,552,000,000	185,360,000	-	-2,793,090,671	-55,730,671
당기순손실				-2,370,976,272	-2,370,976,272
2009.12.31 (전기말)	2,552,000,000	185,360,000	-	-5,164,066,943	-2,426,706,943
2010.1.31 (당기초)	2,552,000,000	185,360,000	-	-5,164,066,943	-2,426,706,943
재평가차익			21,875,350,952		21,875,350,952
당기순손실				-3,115,441,952	-3,115,441,952
2010.12.31 (당기말)	2,552,000,000	185,360,000	21,875,350,952	-8,279,508,895	16,333,202,05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본변동표는 기업회계기준서의 기본재무제표로서 자본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표이다. 기초 자본에서 당기순손익 및 토지재평가차익이 반영되어 기말 자본이 된다.

현 금 흐 름 표

제40기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9기 2009년 01월 0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A공연장 (단위:원)

과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93,411,823		-2,030,899,355
1.당기순손실	-3,115,441,952		-2,370,976,272	
2.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 의가산	1,479,304,243		1,116,863,878	
가.감가상각비	1,438,409,195		900,552,865	
나.무형자산상각비	10,330,000		3,426,666	
다.퇴직급여	29,945,720		49,260,002	
라.유형자산처분손실	-		163,624,345	
마.대손상각비	619,328		-	
3.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 의차감	-		(2,433,062)	
가.대손충당금환입	-		2,433,062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 채의변동	(57,274,114)		(774,353,899)	
가.미수금의 감소(증가)	(54,564,496)		81,821,650	
나.선급금의 감소(증가)	263,563,000		(206,297,000)	
다.선급법인세의	285,810		1,846,744	

4.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감소(증가)				
라.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81,372)		205,120	
마.선급부가세의	81,664,331		2,177,317	
감소(증가)				
바.재고자산의감소(증가)	(156,467,070)		(41,978,702)	
사.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69,306,079)		(247,446,395)	
아.선수금의 증가(감 소)	49,057,120		(324,506,601)	
자.예수금의 증가(감 소)	4,486,022		(386,132)	
차.부가세예수금의증가	21,410,996		-	
카.퇴직금의지급	(123,926,263)		(6,643,809)	
타.미지급 비용의	27,203,887		(33,146,091)	
증가(감소)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1,294,560,713		(86,169,427)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	88,747,800		1,187,000,000	
입액				
가.토지건물의 처분	-		1,187,000,000	
나.보증금의 감소	88,747,800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	-1,383,308,513		-1,273,169,427	
출액				
가.임대보증금의 감소	(23,000,000)		140,880,000	
나.시설장치의취득	1,249,657,059		898,218,602	
다.비 품 의 취 득	58,691,364		182,420,825	
라.소프트웨어의 취득	3,000,000		51,400,000	
마.차량운반구의 취득	94,960,090		-	
바.보 증금의증가	-		250,00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2,938,980,000		2,025,116,106
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인한	2,938,980,000	1	2,325,116,106	
현금유입액				
가.주주임원단기채무의증가	788,980,000		1,625,116,106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나.단 기 차 입 금 의 증가	2,150,000,000		700,00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현금유출액	-		(300,000,000)	
가.단 기 차 입 금 의 상환	-		300,000,000	
IV.현 금 의 증가(감소)(I+Ⅱ+Ⅲ)		(48,992,536)		(91,952,676)
V.기 초 의 현 금		160,798,891		252,751,567
VI.기 말 의 현 금		111,806,355		160,798,891
	별첨 주석은 본 지	배무제표의 일부입	니다.	

●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기준서의 기본재무제표로서 발생주의로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현금주의로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현금주의로 조정하는 과정이 현금흐름표 상 나타난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A 공연장

회사의 개요

회사는 1971년 6월 16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및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552백만원입니다.

주요주주는 대표이사 000 으로 총 255,200주 중 189,624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주요회계처리방침의 요약

회사의 재무세표는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23호를 포함한 대한민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기업회계기 준서 제21호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기 자본변동 표만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충당금

회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수금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 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

회사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회계년도말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기본재무제표로서 앞의 다른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는 부속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재무제표이다.

사례 2 : 비영리법인 미술관

● B미술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1977년 설립되어 미술관과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사업도 하고 있다. 다음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이다.

	제 34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	너 12월 31일 까지	
	제 33 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	5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4 기 금액		제 33 기 금액
자 산			
1 . 뮤 동 자 산		4,138,833,080	760,674,270
(1) 당 좌 자 산		4,087,084,903	708,633,867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966,885,149	541,944	4.075
매 출 채 권	101,009,770	66,112	2,520
대 손 총 당 금	-23.217.000	-18.100	0.000
미수금	44,791,844	115,998	5,747
대 손 총 당 금	-20,740,367	-17,160	0,992
선급금	17,491,507	16,764	4,702
선급제세/기타	864,000	3,07	7,815
(2) 재 고 자 산		52.040.403	52,040,40
마트 상품	52,040,403	52,040	0,403
Ⅱ. 비 뮤 톰 자 산	4	7.591.961.144	48.965.102.344
(1) 투 자 자 산	2	6,695,409,420	26,695,409,420
매도가능증권	26.695.409.420	26,695,405	3.420
(2) 유형 자산	2	0,833,030,724	21,042,401,924
토지	12,026,915,971	12,026,919	5.971

4.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감가상각 누계액	-2,903,407,631		-2,692,401,507	
비품	330,630,160		326,491,523	
감가상각 누계액	-310,463,620		-294,904,132	
구 축 물	98,884,500		98,884,500	
감가상각 누계액	-5,356,244		-412,019	
소 장 작 품	2,569,532,123		2,551,532,123	
악기	653,088,830		653,088,830	
(3) 무형 자산		62,000,000		86,000,000
소 프 트 웨 머	62,000,000		86,000,000	
(4) 기 타 의 투 자 자 산		1,521,000		1,141,291,000
예 치 보 증 금	1,521,000		1,141,291,000	
자 산 총 계		51,730,794,224		49,725,776,614
부 채				
l , 유 동 부 채		1,039,316,549		648,921,956
매 입 채 무	2,912,983		3,947,066	
예 수 금	28,559,590		12,727,545	
예 수 제 세	26,522,650		28,774,281	
선 수 금	6,727,100		4,014,600	
대 관계 약선 수금	149,506,000		143,925,000	
미지급금	825,088,226		455,533,464	
II. 비 유 동 부 채		945,408,559		943,950,117
퇴직급여총당부채	945,408,559		941,950,117	
부 채 총 계		1,984,725,108		1,592,872,073
자 본				
I . 자 본 금		31,590,228,696		31,590,228,696
기 본 재 산	31,590,228,696		31,590,228,696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II. 이 익 잉 여 금	18,155,	.840,420	16,542,675,845
처분전 미익잉여금	18,155,840,420	16,542,675,84	5
자 본 총 계	49,746,	,069,116	48,132,904,5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1,730,	,794,224	49,725,776,614

- B미술관은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차대조표라는 재무제표 명칭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으로 2009년말부터 재무상태표로 대체되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까지 재무상태표가 아닌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 B미술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대분류 표준계정과목인 자본금은 그대로 사용하고 하위 분류로 보통주자본금 대신 기본재산이라고 표현하 고 있다.
- 아트숍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재고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고수불, 재고실사 등의 재고관리가 필수적이다.
-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위한 지출을 유형자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아트홀의 악기를 위한 취득 및 자본적 지출도 유형자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른 유형 자산과 달리 소장작품과 악기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계정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소장작품과 악기를 감가상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매출(영업활동)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되어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때(이를 사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라 함)까지 자산화된 장부금액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감소시켜 사용연수가 완료되었을 때는 감가상각이 모두 완료되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0'이 된다. 그러나 토지와 같이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를 비상각 유형자산이라 함). 기업회계

기준서에는 토지는 비상각 유형자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미술품이나 악기에 대하여는 표준계정과목이라든가 감 가상각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소장작품의 경우 전시나 대여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기의 경우 에는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사용 목적이 아닌 소장품으로서의 악기는 비상각 유형자 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손약계산시	
	제 34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	1일 까지
	제 33 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4 기 금액	제 33 기 금액
l . 매술액	8,040,035	,644 11,925,522,60
기부금수입	5,675,128,434	8,705,231,334
국고보조금	0	175,626,000
오케스트라	683.121.092	1,046,532,523
광고협찬	11.500.000	32.500.000
마트홀대관	418.846.090	464.055.455
작품임대	123.871.500	213,153,999
콘서트관련	417.407.247	470.639.000
마트컨설팅	363,000,000	431.000.000
기타수익	347,161,291	386, 784, 355
II. 매출원가	4,728,451	,235 6,057,223,88
장학사업비	722.133.100	1.100.541.229
문화사업비	280,272,712	150,724,902
국고보조금	0	175,626,000
기타목적사업	45,429,892	44,311,670
오케스트라	622,139,812	991,910,342
미술작품전시	227,941,738	366,777,225
콘서트관런	361,039,621	608,696,280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미스킨이기	100 E40 C17		101 E01 000	
미술관유지	193,540,617		191,501,233	
임차료 등	1,286,544,189		1,504,065,295	
기타사업비	989,419,354		915,069,713	
Ⅲ, 매출총미익(손실)		331,154,409		5,868,298,77
IV. 판매비와관리비		1,676,209,985		1,693,166,99
급여	716,095,506		815,633,252	
복리후생비	111,707,710		123,172,146	
퇴직급여충당금전입	112,845,715		153,809,036	
지급수수료/차량비	238,871,610		180,756,215	
세금과공과	86,567,956		81,004,780	
감가상각비	231,509,838		93,769,402	
무형자산상각비	24,000,000		24,000,000	
대손상각비	8,696,375		10,328,282	
기 타	145,915,275		210,693,878	
V. 영업미익(손실)		1,635,364,424		4,175,131,78
VI. 영업외수익		89,009,406		374,273,3
수입이자	6,239,172		22,058,308	
배당금수익	0		262,007,475	
유가증권처분이익	0		34,034,895	
잡이 익	82,770,234		56,172,701	
Ⅶ, 영업외비용		111,209,255		9,002,335,22
유가증권처분손실	0		8,945,639,990	
유형자산처분손실	0		0	
잡 손 실	111,209,255		56,695,234	
IX.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1,613,164,575		-4,452,930,05
X. 법인세등				
		1,613,164,575		-4,452,930,09

- 매출 및 매출원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교적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사용하고 있어 오케스트라 운영, 아트홀 대관, 미술관 운영, 콘서트 기획 및 장학사업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B미술관의 경우 기부금수입은 주된 매출에 해당하므로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분류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수입 역시 매번 발생하지는 않지만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매출로 분류하고 있다.

2. 외국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

● 우리나라보다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고 회계분야가 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마련에 참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회계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회계기준(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는 미국형에 가깝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유럽형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조직 회계 지침은 미국의 비영리조직 회계처리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외국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기위하여 외국의 박물관 및 공연장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 1 : 비영리법인 박물관

● The J. Paul Getty Trust(이하 'The Trust'라 함)는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 인으로서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결산일을 6월 30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월 31일이나 6월 30일, 9월 30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등 다양하다. 다음은 The Trust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일부이다.

THE J. PAUL GETTY TRUST								
재무상태표								
2010년, 2011년 6월30일								
(단위:천달러)								
Assets (자산)		2011	2010					
Cash (현금)	\$	1,015	275					
Receivables : (미수금)								
Investments (투자미수금)		106,058	48,267					
Interestanddividends		3,658	1,967					
(미수이자와배당금)								
Other(기타미수금)		6,322	4,943					
Investments(투자자산)		5,580,226	4,839,187					
Investments whose use is limited		5,393	2,771					
(사용이제한된투자자산)								
Property and equipment, net		1,209,180	1,260,959					
(유형고정자산,순)								
Collections and other assets		2,001,921	1,935,235					
(소장품과 다른자산)								
	\$	8,913,773	8,093,604					
Liabilities and net assets								
(부채와순자산)								
Liabilities:(부채)								
Accounts payable(외상매입금)	\$	12,314	10,183					
Payables on investment purchases		128,351	58,339					
(투자외상매입금)								
Accrued and other liablities		149,788	171,347					
(기타미지급부채)								
Interest rate swaps(금리스와프)		90,313	110,190					
Bonds payable(사채)		618,320	622,555					
	\$	999,086	972,614					
Net assets:(순자산)								
Unrestricted(제한이없는)		7,909,332	7,118,780					
Temporarily restricted		4,385	1,445					

(일시적제한)		
Permanetly restricted	970	765
(영구적제한)		
	7,914,687	7,120,990
	\$ 8,913,773	8,093,604

-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하고 있다. The Trust는 무조건적 약정을 포함한 기부를 수령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부와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한 여부에 따라 분류되었다. 그런 점에서 The Trust의 순자산과 그 부분에서 변동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기록되었다.
 - 제한이 없는 순자산-기부자가 제시한 조항의 조건이 되지 않고 The Trust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순자산
 - 일시적 제한 순자산-기부자가 제시한 조항의 조건이 되는 순자산으로 The Trust의 행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조항이 충족될 수 있다. 제한 이 충족될 때 일시적 순자산은 제한이 없는 순자산으로 재분류되고 운 영성과표에서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순자산으로 기록된다. 같은 회계기간 동안 수령되고 사용되어진 기부자 제한 기부는 제한이 없는 보조로 기록된다.
 - 영구적 제한 순자산-기부자가 제시한 조항이 조건이 되는 순자산으로 자산이 영구히 유지된다. 이 기금으로부터 발생된 투자수입은 기부자 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The Trust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일반 적 재원으로 사용가능하다.
- The Trust는 소장품을 유형자산의 하위계정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대분류 계정으로 분류하였다. 소장품은 예술작품,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공예품, 그리 고 전시와 교육, 연구 그리고 큐레이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 및

사진장서들로 구성되어있다. 소장품은 만일 구매했다면 원가로 기록되고 기부 받았다면 기부 시 평가가격으로 기록된다. 2011년 6월30일, 2010 6월 30일자 로 The Trust의 소장품은 각각 \$1,990,029,000 그리고 \$1,923,292,000 이었다.

● The Trust의 소장품에서 예술작품은 속성의 변화로 인해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게다가 소장품 중 예술작품은 몰수 또는 개인의 소유권 주장, 예를 들면 나치정권 시기에 도난된 예술작품, 또는 문화적 반환과 관련하여 국가의 소유권 주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The Trust는 이런 위험을 감시하면서 만약소장품의 가치가 손상되고 손실이 추정됐다고 판단될때 The Trust는 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자산의 가치를 조정한다. 2011년 6월 30일 그리고 2010년 6월 30일자로 The Trust의 준비금은 \$3,976,000이다.

THE J. PAUL GETTY TRUST 운영성과표					
2010년, 2011년 6월30일					
(단위: 천달러)		2011	2010		
Change in unrestricted net assets:(제한이없는순자산의					
변동)					
Revenues and other support:(수익및기타보조금)					
Sales and other income(판매와기타수입)	\$	24,547	26,173		
Contributions(기부)		6,779	4,137		
Investment income:(투자수입)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net(이자와배당금수입,		61,511	37,531		
순)		01,311	37,331		
Net realized and unrealized gain on investments(투자		930,158	563,979		
에대한순실현·미실현이익)	_				
Net investment income(순투자수입)		991,669	601,510		
Net realized and unrealized gain(loss) on interest rate					
swap agreements(금리통화스와프에대한순실현·미실이		19,877	(36,307)		
익(손실))					
Net assets released from restriciton(제한으로부터벗어	_	326_	469		

 난순자산)			
Total revenues, other support, and investment income(총수익,기타보조금및투자수입)	-	1,043,198	595,982
Expenses:(비용)			
Program services:(프로그램서비스)			
Museum(박물관)		156,910	162,774
Research Institute(연구소)		46,368	44,057
Conseravation Institute(보존연구소)		26,344	26,915
Foundation and Grants(기금및보조금)		29,145	37,208
Total program services(프로그램서비스총계)	_	258,767	270,954
Supporting services:(보조서비스)			
General and administrative(일반행정)		11,048	10,458
Total expenses(비용총계)		269,815	281,412
Pension and other postretirement plans(퇴직연금)		17,169	(36,013)
Change in unrestricted net assets(제한이없는순자산의 변동)	_	790,552	278,557
Change in temporarily restricted net assets:(일시적제한순자산의변동)	_		
Contributions(기부수입)		3,266	897
Net assets released from restriciton(제한으로부터벗어 난순자산)		(326)	(469)
Change in temporarily restricted net assets:(일시적제한순자산의변동)		2,940	428
Change in permanently restricted net assets:(영구적제한순자산의변동)			
Contributions(기부수입)		205	205
Change in net assets(순자산의변동)	_	793,697	279,190
Net assets, beginning of year(순자산,기초)		7,120,990	6,841,800
Net assets, end off year(순자산,기말)	\$	7,914,687	7,120,990

● 운영성과표는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 주는데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는 순자산의 변동, 일시적 제한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영구적 제한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 또한 운영성과표상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격별 분류는 주석 으로 기재하고 있다.

THE J. PAUL GETTY TRUST								
현금흐름표								
2010년, 2011년 6월30일								
(단위: 천달러)		2011	2010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Change in net assets(순자산의변동)	\$	793,697	279,190					
Adjustments to reconcile change in net assets to								
net cash								
used in operating activities:(운영활동에사용된순자								
산에서순현금으로의변화조정)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감가상각)		46,812	47,345					
Net realized and unrealized gain on investment		930,158	(563,979)					
(투자에대한순실현·미실현이익)		,						
Unrealized(gain) loss on interest rate swap		(10.077)	26 207					
agreements(금리스와프협정에대한미실현손실(이		(19,877)	36,307					
익)) Noncash contributions of art(예술작품의현물기부)		(4,992)	(2.9E0)					
Unrealized loss on property and equipment(유형		(4,992)	(3,850)					
고정자산의미실현손실)		-	1,294					
Loss on disposition of property and equipment		3,459	161					
(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		3,433	101					
Gain on dispositon of collection items(소장품처분								
이익)		(2,696)	(97)					
Pension-related changes(연금관련변화)		(17,169)	36,013					
Contributions restricted for long-term investment		(205)	(205)					

(장기투자를위한제한된기부)		
Changes in operating assets and liablities:		
(운영자산과부채의변동)		
Interest and dividends receivable(이자와배당금미	(1 601)	722
수금)	(1,691)	723
Other receivables(기타미수금)	(1,379)	(3,300)
Other assets(기타자산)	306	(1,203)
Account payable(외상매입금)	2,131	(4,830)
Accrued and other liabilities(기타미지급부채)	(4,390)	4,344
Net cash used in operating activites(운영활동에사	(136,152)	(172,087)
용된순현금)	(130,132)	(172,007)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투자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Proceeds from sales of investments(투자의판매로	9,168,099	8,052,506
인한수익금)	3,100,033	0,032,300
Purchases of investments(투자의구매)	(8,969,381)	(7,856,320)
Pusrchases of collection items(소장품의구매)	(61,971)	(15,687)
Proceeds from the sale of collection items(소장품	2,696	97
의판매로인한수익금)	2,030	31
Purchases of property and equipment(유형고정자	(7,262)	(2,659)
산구매)	() - /	(/ /
Proceeds from sale of property and equipment(유	8,741	37
형고정자산판매로인한수익금)		
Net cash provided by investing activities(투자활동	140,922	175,979
에의해제공된순현금)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재무활동으로		
인한현금흐름)		
Proceeds from bonds payable(사채로인한수익금)	54,100	161,125
Payments on bonds payable(사채지급)	(58,335)	(165,200)
Contributions restricted for long-term investment	205	205
(장기투자로제한된기부)		
Net cash used in financing activites(재무활동에사	(4,030)	(3,870)
용된순현금)		<u> </u>

Net increase in cash(현금의순증가)		740	22
Cash, beginning of year(현금,기초)		275	253
Cash,end of year(현금,기말)	\$	1,015	275
Supplemental disclosure of cash flow information:			
(현금흐름정보의추가정보)			
Cash paid during the year for intersest(이자로인한	¢	22.836	23,428
현금지출)	Ф	22,030	23,420

- 비영리 재단으로 자본의 개념이 없으므로 자본변동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자 산의 변동은 운영성과표에 포함되어 있다.
- The Trust의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현금의 증감과 기초 현금에서 기말의 현금으로 산출하고 있다.
- 현금흐름표상 현물 기부가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등으로 하여 차감 표시 되어 있다. 이는 운영성과표상 기부수입에 현물기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2: 비영리법인 공연장

- THE VIVIAN BEAUMINT THEATER, INC.(이하 '극장')는 미국 링컨센터 내에 있는 극장으로서 링컨센터 후원 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극장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요 면제 목적은 일반 관객들 사이에 극장과 공연 예술의 연구, 감상, 발전을 장려시키기 위한 것이다.
- 극장의 운영은 일반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구분은 특별 프로그램

의 운영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간 운영의 비교를 더욱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이 다. 일반 프로그램은 극장이 해마다 관객 지지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별 프로그램은 원래의 공연스케줄을 넘어선 공연들의 운영과 다른 미디어로의 공연의 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THE VIVIAN BEAUMINT THEATER, INC. (d/b/a Lincoln Center Theater) (combined with The 2002 Lincoln Center Theater Supporting Foundation('Foundation'))						
(combined wit	h The 2002 L			upporting Fo	oundation(For	undation'))
			무상태표 	d		
				년 6월30일자	T	T
		Beaumont Th		Farma dastian	Total	Total
	Unrestricted	Temporarily Restricted	Permanently Restricted	Foundation	2011	2010
Assets(자산)		Restricted	Restricted			
Current Assets						
(유동자산)						
(뉴)	\$10,803,375	\$577,431	\$ -	\$ -	\$11,380,806	\$18,266,144
E	410/000/07	43777131	Ÿ	ų.	Ψ 22 /333/333	Ψ10/200/111
= 무조건적약정	805,759	4,719,019	100,000	-	5,624,778	6,165,404
미수금	1,074,369	-	-	-	1,074,369	675,061
선급제작원가와	3,170,748	-	-	-	3,170,748	437,555
기타유동자산						
제한된양도성예	490,904	-	-	-	490,904	618,661
금증서						
Total Current	16,345,155	5,296,450	100,000	-	21,741,605	26,162,825
Assets(유동자산						
총계)						
Non-Current						
Assets(비유동자						
산)						
무조건적약정	494,797	11,212,795	377,279	-	12,084,871	15,085,667
공익신탁에서의	-	1,024,386	-	-	1,024,386	-
수익권						

유형고정자산,	9,081,869	-	-	-	9,081,869	9,612,465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을제외한						
 순금액						
 건설중인자산	24,953,787	-	-	-	24,953,787	7,752,470
건설중인자산 대	-20,587,700	20,587,700	-	-	-	-
체						
투자	21,234,563	14,370,708	56,329,283	3,406,578	95,341,132	88,292,814
Total Assets(자	51,522,471	52,492,039	56,806,562	3,406,578	164,227,650	146,906,241
 산총계)						
Liabilities and						
Net Assets(부채						
와순자산)						
Current						
Liabilities(유동부						
채)						
외상매입금 그리	\$5,867,014		\$ -	\$ -	5,867,014	2,022,530
고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그	2,422,873			-	2,422,873	1,195,380
리고 미지급비용						
-건설관련)						
선매표소판매	7,659,995	-	-	-	7,659,995	1,432,124
금융비용지급의		-	-	-		9,459
무						
 이연회원비	605,119	-	-	-	605,119	631,808
Total Current	16,555,001			-	16,555,001	5,291,301
Liabilities(유동부						
채총계)						
Non-Current						
Liabilities(비유동						
부채)						
대출-재단	727,964			-727,694		
Total Liabilities	17,282,965		-	-727,694	16,555,001	5,291,301
(부채총계)						
Net Assets(순자						

산)						
운영	5,759,092	-	-	-	5,759,092	14,773,945
유형고정자산	9,081,869	-	-	-	9,081,869	9,603,006
운영준비금	4,700,000				4,700,000	4,700,000
Quasi-endowme	13,636,988				13,636,988	12,164,664
nt						
일시적제한		38,121,331		4,134,542	42,255,873	35,928,519
현금준비금			947,307		941,307	941,307
Lila Acheson &		12,747,758	45,324,387		58,072,145	51,747,752
Dewitt Wallace						
기부						
Doris Duke	1,061,557	342,279	2,800,609		4,204,445	3,746,556
Charitable						
Foundation 기부						
기타 기부금		1,280,671	7,740,259		9,020,930	8,009,191
Total Net	34,239,506	52,492,039	56,806,562	4,134,542	147,672,649	141,614,940
Assets(순자산 총						
계)						
Total Liabilities	\$51,522,471	\$52,492,039	\$56,806,562	\$3,406,578	\$164,227,650	\$146,906,241
and Net Assets						
(부채와 순자산						
(무세되 문사년 총계)						
- 5 세/						

- 극장의 순자산은 제한이 없는 순자산, 일시적제한 순자산, 그리고 영구적제한 순자 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연극의 제작비용(지정기부를 제외한 순 금액)은 선급제작원가로 분류한 후 추정된 남은 제작운영에 대해 정액법으로 상각하다.
- 획득한 유형고정자산은 원가로 기록되고 관련된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극장이 자리잡고 있는 건물 본래의 가치는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극장에 의해 모든 개량은 자본화됐고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연장을 포함한 남은 임대기간 중 짧은 것을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다.

THE VIVIAN BEAUMINT THEATER, INC.

(d/b/a Lincoln Center Theater)

(combined with The 2002 Lincoln Center Theater Supporting Foundation('Foundation')) 운영성과표

2010년 총계와 비교한 2011년 6월30일자

	2010년 공계와 미교만 2011년 6월30일자					
	Property	Tem porarily	Permanently	Foundation	Total	Total
	1- 0. 0	Restricted	Restricted		2011	2010
순자산의 변동						
수익, 이익 그리						
고 기타보조						
매표소수익	\$19,632,574	-	-	-	\$19,632,574	\$36,825,233
회비수익	1,307,215	-	-	-	1,307,215	1,388,387
극장대관비와추						
가요금	13,400	-	-	-	13,400	39,100
주차장수익의지						
분과 공영지에						
대한 시의 자금	378,291	-	-	-	378,291	344,782
지원						
로열티	531,836	-	-	-	531,836	264,358
음반수입	1,666	-	_	-	1,666	3,485
세트와의상판매						
및대여	213,689	-	-	-	213,689	2,062
물품과영업권수						
입	137,657	-	-	-	137,657	236,930
_ 잡수익	66,814	-	-	-	66,814	75,133
- 수익총계	22,283,142	-	-	-	22,283,142	39,179,470
이자와배당금 -	344,868	925,067	-	132,924	1,402,859	1,497,419
투자에대한 실						
현이익, 수수료						
와 비용을 제외	238,196	804,821	-	79,787	1,122,804	29,858
한 순금액						
투자에대한미실	3,234,143	9,136,983	-	-26,521	12,344,605	7,259,001

현이익(손실)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제약이	2,968,564	-2,968,564	-	-	-	-
해제된 수입						
특정목적을위한						
지정된 투자	185,073	-185,073	-	-	-	-
수입						
투자총계	6,790,844	7,713,234	-	186,190	14,870,268	8,786,278
기부	7,921,439	8,727,267	175,000	-	16,823,706	30,819,483
펀드레이징모금						
행사로인한총수	931,900	-	-	-	931,900	793,443
입						
차감: 펀드레이	-119,006	_	_	_	-119,006	-54,937
징 직접비용	113,000				113,000	54,557
제약이 해제된	2,598,652	-2,598,652	_	_	_	_
순자산	2,330,032	2,550,052				
공공지원 총계	11,332,985	6,128,615	175,000	-	17,636,600	31,557,989
수익,이익 그리						
고 기타 보조	40,586,971	13,841,849	175,000	186,190	54,790,010	79,523,737
│ 총계 │ 주의 기부금법						
변동에 근거한	-6,436,188	6,436,188				
기 전공에 근거인 기 재분류	-0,430,100	0,430,100	-	-	-	-
기 세군규 기 수익, 이익 그리						
고 기타 보조	34,150,783	20,278,037	175,000	186,190	54,790,010	79,523,737
	3 1/130/103	20,2, 0,00,	1,5,000	100/100	3 1,7 3 6,7 6 2 6	, 3,323,737
순자산의 변동						
수익, 이익 기						
타 보조의 총계	\$34,150,783	\$20,278,037	\$175,000	\$186,190	\$54,790,010	\$79,523,737
비용						
프로그램서비스						
연극제작과 운	34,717,062	_	_	-	34,717,062	39,974,232
영	3 1,7 17,002				3 1,7 17,002	33,37 1,232

특별 예술 프로						
젝트	743,258	-	-	-	743,258	925,466
예술 관리	1,692,402	-	-	-	1,692,402	1,657,362
마케팅, 회원과	1 240 725				1 240 725	1 165 066
봉사활동	1,248,735	-	-	-	1,248,735	1,165,966
극장빌딩운영	4,880,955	-	-	-	4,880,955	4,804,388
제단 보조금	-	-	-	208,692	208,692	150,603
프로그램서비스	43,282,412			208,692	43,491,104	48,678,017
총계	43,202,412	-	-	200,032	43,431,104	40,070,017
보조서비스						
일반관리비	3,361,607	-	-	1,405	3,363,012	3,496,993
기금조성 _	1,878,185	-	-	-	1,878,185	1,492,251
보조서비스 총	5,239,792	_	_	1,405	5,241,197	4,989,244
계 _	3,233,732				3,2 .1,10 ,	.,,500,2
비용총계 -	48,522,204	-	-	210,097	48,732,301	53,667,261
│ 순자산의 증가	-14,371,421	20,278,037	175,000	-23,907	6,057,709	25,856,476
(감소)	1 1,57 1, 121	20,2,0,037	173,000	23,301	3,037,703	23,030,170
기초순자산	48,610,927	32,214,002	56,631,562	4,158,449	141,614,940	115,758,464
기말순자산	\$34,239,506	\$52,492,039	\$56,806,562	\$4,134,542	\$147,672,649	\$141,614,940

- 연극의 제작으로부터 매표소 수익은 가득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된다. 공연보다 앞선 티켓의 판매는 티켓판매로 인한 선수수익(부채로 계상됨)으로 표시하고 미래에 공연이 시작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 ◎ 회비수익은 수령했을 때 이연(부채로 계상됨)되고 회원기간동안 인식된다.

THE VIVIAN BEAUMINT THEATER, INC.

(d/b/a Lincoln Center Theater)

(combined with The 2002 Lincoln Center Theater Supporting Foundation('Foundation')) 현금흐름표

2010년 총계와 비교한 2011년 6월30일자

	2011	2010
Cash Flows From Operating Activities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ncrease in net assets (순자산의 증가)	\$ 6,057,709	\$ 25,856,476
Adjustments to reconcile increase in net assets to net cash provided (used) by operating activities: (영업활동으	77.5	.,,
로인한 순현금과 순자산의 증가 차이조정)		
Additions to permanently restricted net assets (영구적제	(175,000)	(979,933)
한 순자산의 부가수입) Depreciation(감가상각)	852,625	788,777
Realized and unrealized gains on investments(투자에서 의 실현 그리고 미실현 이익)	(14,344,879)	(8,053,179)
Donated securities(기부받은 유가증권) (Increase) decrease in: (아래항목의 감소(증가))	(430,893)	(1,442,856)
Unconditional promises to give(무조건적 약정) Accounts receivable (미수금) Prepaid production costs and other current assets(선	1,492,649 (399,308)	(16,125,033) 328,456
급제작비용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2,733,193)	32,632
Beneficial interest in charitable trust (공익신탁에서의	1,024,386	-
수익권) Increase (decrease) in: (아래항목의 증가(감소))		
Accounts payable and accrued expenses(외상매입금과 미지급비용)	3,844,484	(1,349,085)
Advance box office sales (선매표소판매) Deferred membership fees(이연회원비)	6,227,871 (26,689)	(1,444,435) (51,413)
Net Cash Provided (Used) By Operating Activities(운	1,389,762	(2,439,593)
영활동에의해제공된(사용된) 순현금)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Purchase of property and equipment (유형고정자산의구 매)	(271,220)	(150,830)
때) Construction in progress expenditures (건설진행중 지출) Sale of investments(투자의 판매) Purchase of investments (투자의 구매) Purchase of restricted certificate of deposits (양도성예금	(16,024,633) 20,422,948 (12,695,493) (158,264)	(2,446,688) 17,618,045 (10,662,123) (96,094)

증서의구매) Sale of restricted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의 판매)	286,021	-
Net Cash Provided (Used) By Investing Activities (투 자활동의해 제공된(사용된) 순현금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 (재무활동으로인	(8,440,641)	4,262,310
한 현금흐름) Additions to permanently restricted net assets (영구적제한 순자산의 부가물)	175,000	653,267
Payment of capital lease obligation (금융리스의 지급의무) Borrowings under line of credit (대출한도하의 대출) Repayment of line of credit borrowings (대출한도하 대출	(9,459) 5,000,000	(11,072) -
의 재지급) Net Cash Provided By Financing Activities (금융활동으로	(5,000,000)	-
인한 제공된 순현금) Net increase (decrease) in cash and cash equivalents (현금	165,541	642,195
및현금등가물의 순증가(감소) Cash and cash equivalents, beginning of year (현금및현금	(6,885,338)	
등가물, 기초) Cash and Cash Equivalents, End of Year (현금및현금	18,266,144	15,801,232
등가물,기말) Supplemental Disclosure (추가정보)	11,380,806	18,266,144
Interest paid (이자지급)	\$ 36,011	\$ 420

- 극장의 현금흐름표는 박물관인 The J. Paul Getty Trust의 현금흐름표의 형식과 거의 일치한다.
- 미국의 경우 1993년 이전에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회계기준 및 재무보고서 의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기금(Fund)회계방식5)을 적용하였다. 이는 비영리조직의

⁵⁾ 기금회계에서는 조직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기금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금의 각각을 회계와 재무보고의 주체로 본다.

주된 자산이 기금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조직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유용하나 일반 목적의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1993년 이후 재무회계기준서(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제116호와 제117호가 제정되면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이 통일되었다. 기금에 기초한 재무보고를 폐지하고 조직 전체에 대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의 기준을 제시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 및 성과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이기준서는 문화예술단체를 포함한 비영리조직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미국의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형식을 띠게 되었다.

사례 3 : 특별법인 공연장

● The Esplanade Co Ltd (the "Company")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장으로 서 정부가 투자한 유한회사로 매년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 공연장의 대관, 쇼핑몰의 임대, 티켓판매, 기념품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인 'FRS'를 적용하고 있다.

대	nce Sheet 차대조표 3월 31일자	
	2011	2010
	\$	
ASSETS(자산)		
Current assets(유동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현금및현	21,659,841	32,689,75
금등가물)		
Trade receivables(매출채권)	1,204,178	970,33
Grants receivable (보조금미수)	18,679,172	7,933,01
Merchandise(상품)	21,242	22,62
Other current assets(기타유동자산)	3,421,124	4,170,91

	44,985,557	45,786,64
Non-current assets(비유동자산)		
Investment in associated company(관	5,769,829	4,599,37
련회사투자)		
Property, plant and equipment(유형 자산)	8,211,210	10,123,33
	13,981,039	14,722,69
Total assets(자산총계)	58,966,596	60,509,34
LIABILITIES(부채)		
Current liabilities(유동부채)		
Payables(외상매입금)	11,900,947	12,915,19
Specific funds-programmes (특정 기	117,908	325,01
금-프로그램)		
	12,018,855	13,240,20
Net assets(순자산)	46,947,741	47,269,13
Accumulated funds(누적된 기금)	36,427,327	34,728,55
Deferred grants(이연된보조금)		
Investment grants(투자보조금)	2,505,007	2,505,00
Deferred capital grants(이연된자본보	8,015,407	10,035,57
조금)		
	10,520,414	12,540,58
	46,947,741	47,269,13

- 유한회사로서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재무상태표 양식 및 계정과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자본의 구성에 있어서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특징적인 점은 '보조금미수'라는 계정이다. 이 공연장은 정부가 투자하여 설립된 법

ر ـ

인으로서 정부 및 여러 기관으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보조금은 싱가포르 정부(정보통신예술부("MICA") 통해 관리되는)로부터 받고 그와 관련된 기관들은 반복적 운영과 자본금 지출의 지불 그리고 예술품의 전시와 관련된 행사가 목적인 기관들이다.
- (2)회사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조금은 이연된자본보조금계정으로 되고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이 일치할 필요가 있는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인식된다.
- (3)주기적 개선작업과 MICA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교체를 위해 받은 보조금은 지출이 보조금수령보다 앞서서 발생되었을 때 회사에 의해 보고된 미수금을 상계하도록 한다.
- (4)투자를 위한 보조금은 투자보조금계정으로 되고 투자의 처분에 대한 수입과 지출표에 기록 될 것이다.
- (5)반복적이고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을 위한 보조금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비용과 일치하기위 해 발생주의로 이익과 손실을 인식한다.
- (6)국립예술위원회("NAC")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the Drama Centre("DC")의 반복적인 운영지출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운영잉여도 오로지 DC의 운영과 장비의 개선/관리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을 것이다.
- (7)또한 보조금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과 DC에 위치하고 있는 NAC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리노베이션/개선작업을 위해서 NAC로부터 받고 지출이 보조금수령보다 앞서서 발생될 경우 회사에 의해 보고된 미수금을 상계하도록 한다.

INCOME & EXPENDITURE STATEMENT

(손익계산서)

FOR THE YEAR ENDED 31 MARCH 2011년 3월 31일자로 끝나는 회계연도

2011 2010 S\$'000 S\$'000

INCOME(수익)

Donations in Cash(현금 기부)

- Tax Deductible(세금 공제 가능)

2,203

1.896

- Non-Tax Deductible(세금 불공제)	2,146	1,728
Donations in Kind(현물 기부)		
- Tax Deductible(세금 공제 가능)	-	-
- Non-Tax Deductible(세금 불공제)	118	32
Grants/Sponsorships(보조금/협찬금)	42,859	42,382
Investment Income(투자수익)	159	150
Investment Gains(투자이익)	-	-
Others(기타수익)		
- Venue hire & event services(연회	7,195	8,654
장 대관 및 이벤트 서비스)		
- Malls & other rental(쇼핑몰 임	7,188	6,706
대)		
- Ticketing(티켓판매수익)	6,094	4,615
- Other Income(기타수익)	2,766	3,441
Total Income(수익 총계)	70,728	69,604
EXPENSES(비용)		
Direct Fund-raising Expenses(펀드	115	158
조성비용)		
Charitable Activities Expenses(자선		
활동비용)	10.005	16.044
- Local(국내)	18,995	16,044
- Overseas(국외)	-	-
Other Operating & Adminstration	51,090	48,998
Expenses(기타 운영 및 관리비)		
Total Expenditure(비용총계)	70,200	65,200
	••	11, 11
Surplus / (Deficit) 이익(손실)	528	4,404

[◎] 티켓판매수익이나 공연장대관수익보다 보조금수익의 비중이 훨씬 크다.

- _
-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의 형태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하여 는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비용의 세부내역은 주석에 표시되어 있다.
- 이 공연장의 수익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수입은 상품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상품과 서비스세를 제외한 순금액, 리베이트와 할인에 대한 받은 금액 또는 미수금의 공정가치로 구성된다.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1) 장소대관과행사서비스

장소대관과 행사서비스는 대관기간동안 발생주의로 인식된다.

(2) 쇼핑몰과기타임대

대여 수입은 임대기간에 대해 정액법으로 인식된다.

(3) 티켓판매

티켓판매로 인한 수입은 쇼나 행사가 끝났을 때 번 것으로 인식된다.

(4)스폰서십과기부

기부는 수령을 기준으로 인식된다. 스폰서십은 명시된 지출이 발생될 때 인식되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스폰서십을 제외하고 스폰서십은 협정기간동안 발생주의로 인식된다. 현물스폰서십은 수령한 날의 추정된 공정가치를 근거로 수입에 포함된다. 현물스폰서십은 만일 현물스폰서십이 회사의 필요를 충족하고, 금액이 확실히 측정 되고, 현물스폰서십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면 현물스폰서십으로 인식된다.

(5)주차

주차수입은 수령기준으로 인식된다.

(6)상품판매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이 고객한테 배달되고, 그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고 관련 미수 금에 대한 수금이 합리적으로 확신될 때 인식된다.

(7)정기예금에대한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된다.

Cash Flow

현금흐름표

2011년 3월 31일자로 끝나는 회계연도

Cash flows from operating	2011	2010
activities(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Cash receipts from customers(고객들로부터	27,595,028	28,083,133
수령한 현금)	21,333,020	20,003,133
Cash paid to suppliers and employees(공급자와	-54.235.430	-48,914,409
직원들에게 지불한 현금)	- ,,	2,5 , 22
Net cash used for operating	-26,640,402	-20,831,276
activities(운영활동에 사용한 순현금)		
Cash flows from investing		
activities(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Purchase of property, plant and	-1,876,892	-1,498,938
equipment(유형자산구매)		
Proceeds from disposal of property, plant and	23,000	8,624
equipment(유형자산처분이익)	211 264	120 527
Interest received(수취이자)	211,364 -1,642,528	129,537 -1,360,777
Net cash used for investing activities(투자활동에사용한순현금)	-1,042,320	-1,300,777
activities(구시월중에시중인군연급)		
Cash flows from financing		
activities(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Grants received from	17,033,013	36,317,610
Government(정부로부터받은보조금)		
Grants received from National Arts	220,000	-
Council(국립예술위원회로부터받은보조금)		
Release of deposits pledged (차입금의 해제)	_	646,000
Cash held in trust(신탁에서보유한현금)	-10,163	-2,704
Net cash provided by financing	17,242,850	36,960,906
activities(재무활동에제공된순현금)		
Not (degreese) (increase in cash and cash		
Net (decrease)/increase in cash and cash		

equivalents held(보유하고있는		
현금및현금등가물의 순(감소)증가)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beginning of	32,559,137	17,790,284
financial year(기초회계연도의현금및현금등가물)		
Cash and cash equivalents at end of financial	21,519,057	32,559,137
year(기말회계연도의현금및현금등가물)		

● 현금흐름의 양식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양식과 일치한다.

3. 국내외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현황요약

- 우리나라의 문화시설 운영단체는 법적 형태에 따라 '출연기관으로의 보고', '이사회보고', '세무신고', '지원금 정산 보고' 등의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계산서만을 작성하고 있는 단체도 일부 있다.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수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례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 법적 형태에 따라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재무제표나 계정 과목이 상이한 것은 물론, 같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공통된 회계기준이 없다보니 비영리법인끼리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법적 형태에 따라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재무제표나 계정 과목이 상이한 것은 물론, 같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공통된 회계기준이 없다보니 비영리법인끼리도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리법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있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권이 상장된 영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특별히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장 영리법인은 물론 비상장 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비상장 영리법인의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에의하여 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극장을 여러 개소유하고 있는 'The Shubert Organization'이 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재무제표를 수취할 수 없어 사례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비영리조직의 회계지침이 있어 재무제표의 종류와 양식이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싱가포르의 공연장의 사례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계가 애매하나 우리나라 의 영리법인인 공연장의 재무제표 표시와 회계처리방법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문화시설 회계기준(안)에서는 영리조직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제 5 장 | 문화시설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

1. 문화시설의 회계처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1.1 적용대상

-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는 비영리법인의 형태 뿐 아니라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도 다수 있다. 박물관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체 등록 박물관 400개 중 29개가 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등록이 가능하여 보조금의 수취에도 제한이 없으며,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 편리성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형태가 가장 많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도 종종 있다.
-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본 연구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리조직(개인사업자 포함)과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를 기초로 업종별회계처리준칙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영리조직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의 규모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장사의 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는 관리 정도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회계인력이 따로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있지도 않은 곳도 수없이 많다. 문화예술단체 중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타 문화예술단체에 비해 비교적 조직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고, 회계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의 범위가 문화시설 운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2. 재무제표의 구성과 표시방법

● 모든 법적 형태의 문화시설 운영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법적 형태별로 재 무제표의 구성과 표시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은 상법과 규모에 따라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_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 시행중인 상법에서 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기본 재 무제표로 요구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기본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아직까지 개정된 시행령이 공표되지 아니함)가 기본 재무제표가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 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부기에 의한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 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 모 이상의 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으 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의 기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주권이 상장된 영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기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와 차이 있음),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의 종류>

상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재무상태표(구, 대차대	재무상태표(구, 대차대	재무상태표(구, 대차대
대차대조표	조표)	조표)	조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삭제 예정)	(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	주석	주석

●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합하다. 자본금은 회사의 소유주 인 주주가 납입한 주권의 액면가를 말하며 초과 납입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미달 납입 금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표시한다. 여기에 기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증감액이 표시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누적하여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표시한다.

<자본의 구성>

구분	용어 설명
자본금	주주가 납입한 주권의 액면가
자본잉여금	초과 납입금인 주식발행초과금 및 기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NE89B	증가하는 금액
 자본조정	미달 납입금인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및 기타 주주와의 거
小子工 3	래로 인하여 감소하는 금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의 평가로 인한 미실현손익 등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기업의 경영성과를 누적액

● 자본의 다른 용어로는 순자산이라고 표현한다. 순자산의 개념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감한 잔여지분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본 대신 순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자본 용어 대체>

영리법인 자본의 구성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전기오류수정손
익, 당기순손익)

기본순자산 (기본재산, 출연금)
순자산조정 (유형자산재평가차익, 매도가능증권평 가손익, 국고보조금 등)
적립금 및 잉여금 (기초 운영차액, 전기오류수정손익, 당 기 운영차액)

비영리법인 순자산의 구성

●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의 보고를 위하여 수지계산서(또는 예산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수지계산서는 손익계산서와 달리 현금주의에 의하여 현금의 나고 듦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므로 현금흐름표라고할수 있다.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으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직접법은 수지계산서와 같이 기업의 일정 기간동안의 현금의 나고 듦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고, 간접법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산출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현금주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영리법인은 수지계산서의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간접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굳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만들도록할 것이 아니라 그 수지계산서를 현금흐름표로 사용하도록 기준에 명시하려고 한다.

1.3. 재고자산

-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눈에 보이는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 대기 중인 제품이나 유통업체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재화 즉 상품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정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을 말한다. 건설업의 경우 준공 중인 건축물이 완공되어 판매되기 전에 지출된 건설비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원가와 기타 직접 관련된 재료원가와 기타원가로 재고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원가와 기타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기. 재고자산의 계상 목적은 수익·비용 대응에 있다. 판매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투입된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수익이 창출되면 대응하는 원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재고자산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자산이고 곧 비용이 된다.
-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경우 전시나 공연의 사전 제작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전시나 공연의 티켓이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박물관 및 미술관은 준비 중인 전시회와 관련된 지출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전시 기간 동안 전시비용으로 대체하고, 공연장 역시 공연 제작비용을 공연 개시 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공연기간 동안 공연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한 도록이나 프로그램역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트숍 및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트숍 판매용 상품 및 제품과 카페테리아 재료 등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⁶⁾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3

⁷⁾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11

1.4. 투자자산

● 어떤 단체는 공연 제작에 투자하고도 투자자산이라는 계정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선급금으로 계상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공연이나 전시에 투자하거나 투자의 형태로 공동 제작하는 경우 또는 공연이나 전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특정 공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투자', 공연 등의 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출자금'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보인다. 투자 시회계처리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투자 시>

차) 프로젝트투자 1,000

대) 보통예금 1,000

<중간 수익 배분 시>

차) 보통예금 300

대) 프로젝트투자 300

<프로젝트 완료 시 ①>

차) 보통예금 800

대) 프로젝트투자 700 프로젝트투자수익 100

<프로젝트 완료 시 ②>

차) 보통예금 600 프로젝트투자손실 100 대) 프로젝트투자 700

1.5. 유형자산

- 1) 소장용 도록
- 소장 및 무료배포 목적의 도록은 금액적 중요성이 적을 뿐 아니라 자산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소장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없으

며, 추후 매각 등으로 인한 처분가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록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어 소장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록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처분할 경우 대가를 충분히 수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일부 자산성이 있는 도록의 경우 상속 문제 등으로 은폐하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소 장품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가액을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록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자산화 가능한 도록은 1.6. 유물에 포함될 것이다.

2) 공연장 등의 위탁 운영

● 건물 소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고 이 건물을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을 준 경우(이러한 사례가 많음) 건물 리모델링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 다면 건물의 장부가액에 가산되고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계상된다. 자본 적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은 원상복구 또는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교육청 소유의 건물을 교육청 산하기관에 위탁을 준 경우 교육청 산하기관의 재무제표에는 건물을 이전 받은 것처럼 자산으로 표시하고 교육청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교육청 소유의 건물이므로 교육청 산하기관 재무제표에 표시된 건물을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 장부가액에 가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한은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며,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물의 가치 증가로 인한 효익은 수탁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건물 리모델링 지출은 수탁자에게 있어 자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건물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위탁자인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면, 위탁자의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표시하면 된다.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3) 유형자산 재평가

● 일부 단체에서는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은 지 오래되어 취득원가가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하여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정관에 재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재평가방법이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 방법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함)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1.6. 유물

1) 취득 시 회계처리

●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소장품, 유물, 수집품 등을 재무제표에 유물 등으로 자산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물 등의 취득 방법은 구입, 수증, 교환 등이 있을수 있다. 또한 대여하여 전시하는 경우도 많다. 구입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유물 등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의 측정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구매를 통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가명확하지만 수증이나 교환의 경우 취득원가의 측정이 어렵다. 최근 공인된 감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산화를 위해서라도 감정기구가 필요하다. 이 취득원가는 자산화 회계처리 뿐 아니라 박물관자료의 보험 가입이나 보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2) 적절한 계정과목

●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소장품, 유물, 수집품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는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자료'가 적절해 보인다.

3) 감가상각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한다.

4) 취득 이후 지출

●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과자료의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보존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 비용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7. 공연장비

- 공연장의 무대장비나 공연장비는 유형자산 하위 계정의 기계장치나 비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술의전당의 경우에도 공연장비는 기계장치, 피아노는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정 과목일 뿐 실정에 맞지 않다. 또한 다른 기계장치나 비품의 내용연수대로 적용하게 되면 무대장비나 공연장비의 실제 사용연수와 맞지 않다. 공연장비는 '공연장비', 피아노 등은 '악기'라는 계정과목을 유형자산의 하위 계정으로 기계장치나 비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준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무대소품이나 세트장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즉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대의상은 재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개별자산 별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하다.

1.8. 무형자산

1) 판권 및 대여

-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원권, 골프이용권,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직접 전시나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 개발비 성격을 띠고 있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한 비용을 직접비용 등으로 한정하는 등 자산화 요건은 엄격하다. 따라서 기획 및 개발 단계에 있는 작품을 개발비로 계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명칭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업권

●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공연장의 경우에도 양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영업권이 발생한다. 사업결합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상세하 게 나와 있으므로 사업결합 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결 합 시 영업권 인식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것을 기준에 언급할 필요는 있다.

1.9. 부채

1) 선수수익

- 박물관 및 미술관과 공연장이 대관을 하고 대관 일정보다 대관료를 미리 수취한 때 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취한 시점에 전액 수익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중에 대관 일정이 끝나면 수취한 시점에 전액 수익으 로 인식하여도 되지만 대관 일정이 결산일에 걸쳐 있다면, 결산 시점에 남은 대관 일 수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의 전시 및 공연 일정 시작 전 티켓 판매수입은 전시 및 공연 전 화불이 가능하므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한 시점까지 수익인식을 보류하여야 한다. 즉 결산일 현재 티켓 예매수입은 수익이 아닌 전액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다.

2) 프로젝트투자예수금

● 앞서 투자자산 편에서 특정 공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프로젝트투자'이라고 하여 투 자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프로젝트투자를 받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투자 시>

차) 보통예금 1,000

대) 프로젝트투자예수금 1,000

<중간 수익 배분 시>

차) 프로젝트투자예수금 300

대) 보통예금 300

<프로젝트 완료 시 ①>

차) 프로젝트투자예수금 700

대) 보통예금 600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프로젝트투자손실보전수익 100

<프로젝트 완료 시 ②>

차) 프로젝트투자예수금 700 프로젝트투자이익분배금 100

대) 보통예금 800

1.10.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령의 목적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 목적이라면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라면 그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하며, 조건 없이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당기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수령으로 인한 손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기업회계기준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상환할 금액이	①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		
	확정된 경우	② 향후 상환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상환할 금액이	①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		
있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②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경우	© 6구 구리를 구세크의 클릭을 6구 구승의 년승 <u>교</u> 로 지다		
		① 수령시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		
	자산취득에	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사용될	② 관련 자산 취득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국고보조금	③ 취득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		
상환의무가		④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		
없는 경우		① 당기수익(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 처리		
	기타의 국고보조금	②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선수수익으로 처리		
		③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특정비용과 상계		
		처리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대부분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재무제표의 모든 계정은 국고보조금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모든 계정에 차감계정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재무제표의 수치가 모두 '0'이 되어 오 히려 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는 '출연금수익'이나 '보조금수익'으 로 하여 전액 수익인식하고 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고에 의해 보조 받는 것은 수 익 보전과 비용 보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수익 보전의 의미로 보면 국고보 조금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비용 보전의 의미로 보면 해당 비용과 상계처리하여 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비용 보전 목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국고 지원 받는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거의 '0'으로 계상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 보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 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목적적합하다. 그러나 토지, 건물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지워 금을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다면, 일시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재무제 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출연금 수익이나 보조금수익으로 하여 수익 인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취득 목적의 지원금 은 순자산의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자산취득을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자산 항목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처분 시에 전액 처분손익과 상계할 것을 제 아하다8).

1.11. 수익의 형태

● 정부는 예산회계에서 현금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도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물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

⁸⁾ 이 방법은 제4장의 싱가포르 영리법인의 사례와도 일치한다.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본항목 중 이연된자본보조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 65페이지 참고.

다 하더라도 발생주의보다는 간편한 현금주의로 수익·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가 거래의 실질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고, 기간별 손익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이 더 높다는 인식을 정부에서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부 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 한편, 영리기업의 발생주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유는 영리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의 목적이 다르므로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에 발생주의 회계를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는 목적은 정확한 기간손익의 계산에 있다. 영리기업의 경우에 발생주의에 의한 것이 정확한 기간손익 산출에 도움이되고 이를 통해서 경영자의 업적과 기업의 수익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회계의 목적은 기간손익의 산출보다는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현금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현금주의의 장점인 편의성과 발생주의의 장점인 정확성을 절충한 방식으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등은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하고 미수금 또는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기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중소규모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일반적인 수입 지출을 현금주의에의해 기록하고 금융기관 차입이나 외부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발생주의에 의해 조정하여 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 지원금 수입 등에 있어 현금수입시점을 수익인식시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 편의성을 위하여 기중에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다가 결산시점에 일부를 발생주의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완전하게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전환하는 것은 현금주의보다도 오히려 더 회계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하는 데 애매하다. 수익인식의 경우에 한하여 소규모 단체 또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수익에 대하여는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특례를 한정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비록 기중에는 현금주의로 회계처리 하더라 도 결산시점에는 미지급비용은 물론 유형자산(공연장비, 무대장치 등)과 관련하여 감 가상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선급비용의 계상 등 발생주의 개념은 모두 적용하여야 하다.

- ◎ 발생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을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 수익의 기간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대부분 회계연도 말과 보조기간의 만료일이 일치하지만 지원금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 한다. 국고보조금과 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익이 회계연도 말에 걸쳐서 발생한다면 적 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지원의 성격에 따라 수익인식시기 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동안 단체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결산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선수수익으로 계 상하여 수익 인식을 이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정 공연 지원을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공연이 실연될 때에 인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박물관 및 미술관과 공연장이 대관을 하고 대관 일정보다 대관료를 미리 수취한 때 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취한 시점에 전액 수익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중에 대관 일정이 끝나면 수취한 시점에 전액 수익으 로 인식하여도 되지만 대관 일정이 결산일에 걸쳐 있다면, 결산 시점에 남은 대관 일 수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의 전시 및 공연 일정 시작 전 티켓 판매수입은 전시 및 공연 전 환불이 가능하므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한 시점까지 수익인식을 보류하여야 한다. 즉 결산일 현재 티켓 예매수입은 수익이 아닌 전액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이용권을 판매한 경우의 수익인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용권(관극회원)의 형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용권은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10개의 공연 또는 전시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모든 공연 또는 전시

의 30%를 할인하여 주는 이용권도 있다. 각 이용권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구입일로부터 몇 개의 공연 또는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미 관람한 공연 또는 전시 ÷ 관람 가능한 공연 또는 전시)으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나 관극회원의 수가 많고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가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계산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간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되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식지 정도만 배포되고 특별히 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회비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수익 인식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만약 회비 납부가 강제적인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 즉시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12. 수익과 비용의 대응

● 일반적으로 매출을 제품매출, 상품매출, 서비스매출로 분류하였다면, 매출원가 역시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서비스매출원가로 분류한다. 또한 국내매출과 수출매출 로 분류하였다면, 국내매출원가와 수출매출원가로 분류한다. 문화시설 운영단체가 매출을 공연수익, 대관수익, 아카데미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매출원가를 공연비용, 대관비용, 아카데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내부관리 목적상 유용할 뿐 아니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성격별 분류법'인데 이는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예 :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 등)별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모두 허용하되 기능별 분류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주석으로 성격별 분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 운영단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성격별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기능별 분류에 의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주석으로 성격별 분류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한다.

● 한편,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수익과 비용은 기간 간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산일 이후에 공연 또는 전시가 시작되는 경우 공연에 투입되는 비용들은 결산일 이전에 계상하고 입장료수입은 결산일 이후에 계상하는 경우가 많아 결산기 별 수익 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일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산일 이전에 투입된 원가를 비용화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3. 국고보조금수입, 기부금수입, 출연금수입 등의 분류

-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보조금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문화예술단체 중 이를 채택 및 준용하여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경우 보조금수입이나 지원금수입, 기부금수입이 주를 이루는 경우 매출과 매출원 가는 '0'으로 표시되고 대부분의 비용이 판관비로 표시되어 영업손실이 산출되고 영업외수익에 보조금수입, 지원금수입, 기부금수입을 기재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업수익의 성격을 갖는 보조금도 있을 것이라는 착안에서 기업회계기준해석이 개정되어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으로도 분류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국고보조금수입은 영업수익(사업수익)으로 분류가능하다. 단, 문화예술서비스와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을 받는 등 영업과 무관하게 받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기부금수입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상 표준계정과목 분류는 영업외수익으로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기부금수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주요한 수입 원천이므로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구분은 반복적이냐 비반복적이냐의 차이이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하위 계정에서 계정을 별도 표시할 지 기타로 분류할 지는 금액적 중요 성에 따른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보조금수입, 지원금수입, 기부금수입이 주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된 활동과 관련이 있어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수익으로 표시한다.

●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보전 목적의 보조금이 므로 인건비와 상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대부분의 인건비를 이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표시하면, 인건비가 '0'으로 표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건비 보조 성격의 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4. 반환할 보조금 표시 방법

● 보조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반납하 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 단체는 반환할 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수입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용의 하위 계정으로 비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보조금수입의 반납예정액이므로 수익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되 당해연도에 인식한 보조금수입이 아닌 당해연도 이전에 인식한 보조금수입에 대한 반납액일 경우에는 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보조금수입의 금액적 중요성이 높지 않다면, 보조금수입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 보조금반납예정액을 관리 계정으로만 사용하고 보조금수입으로 순액 표시하는 것도 재무제표의 양식을 단순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모두 상대계정은 미지급반환금으로 하여 미지급 금과는 별도로 부채 표시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문화시설 회계처리기준(안)

목적

1. 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중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이하 '문화시설'이라 함)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문화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달리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2. 이 기준은 문화시설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운영단체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법적 형태와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제표 표시 및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5.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6.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재무제표

- 7.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는 현금흐름표를 수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다.)로 구성하며 주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범위 2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해당 적용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8.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법규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 경리 하더라도 법인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무제표를 기본재무 제표로 하여야 한다.
- 9.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10.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회계정책의 결정

- 11. 이 기준에서 선택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한 경우와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질적특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결정하다.
- (가) 회계정보는 목적적합하여야 한다.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가치나 피

드백가치를 가진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 (나)회계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 히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중립적일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 12. 이 기준에서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가) 유사 또는 관련 거래나 회계사건에 대한 문화시설 운영단체 회계처리기준
- (나) 일관성 있는 회계관습 및 회계실무

▮재무상태표

- 13. 재무상태표는 회계실체의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해당 회계실체 전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14.**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 15.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16.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 17.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유동자산은 당 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 한다.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 18. 다음과 같은 자산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 (가)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 (나) 1년 이내에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라) 상기 외에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19. 다음과 같은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 (가) 회계실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전시도록, DVD·CD, 기타의 판매물 품 등)
- (나)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계실체가 보유중인 미완성공연물 및 미완성전시물
- (다)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계실체가 보유중인 저장품(공연의상, 무상배포목 적의 전시도록, DVD·CD, 기타의 기념품 등)
- 20. 다음과 같은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 (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
- (나)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등
- (다) 공연물 등에 대한 프로젝트투자 등
- 21. 유형자산은 회계실체가 고유한 운영활동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가) 토지, 건물, 입목 등
- (나) 구축물
- (다) 차량운반구
- (라) 공기구비품
- (마) 건설중인자산
- (바) 공연용장비·장치 및 전시용장비·장치
- (사) 악기
- (아) 박물관·미술관자료
- (자) 건설중인 공연용자산 및 건설중인 전시용자산

(차) 기타

- 22. 공연의상 또는 공연장비 등은 공연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 회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고자산 중 저장품으로 계상할 수 있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공연장비 등 공연용장비·장치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 23.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되 취득원가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취득 이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 24.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은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매 회계연도 말 재검토하여야 한다.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재료가 마모되어 가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25.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영업권,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26.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 동부채로 구분한다.
- 27.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가)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반환예정보조금, 선수수익 등
- (나)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공연차입금, 전시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프로젝트투자예수금 등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 28. 다음과 같은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가) 퇴직급여충당금
- (나)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의무가 없는 장기차입금, 장기공연차입금, 장기 전시차입금, 프로젝트투자예수금 등
- 29.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 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다.
- (가)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 (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운영성과 등을 표시한다.
- (다) 순자산조정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 30. 기본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은 자본금으로서 법정자본금을 말한다.
- (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은 설립시 출연받은 출연금으로 기본순자산 대신 출연금 또는 기본재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 (다)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의 기본순자산은 없다.
- 31. 적립금 및 잉여금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리법인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
- (나) 비영리법인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이익잉여금으로서 운영성과에 의한 순자산 증감의 누적액이다.
- (다)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이익잉여금으로서 운영차액의 누적액이다.
- 32. 순자산조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영리법인의 순자산조정은 자본조정으로서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 (나) 비영리법인의 순자산조정은 기본순자산이나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다)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의 자본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손익계산서 또는 운영성과표

- **33.** (1)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가) 사업수익
- (나) 사업비용
- (다) 사업손익
- (라) 사업외수익
- (마) 사업외비용
- (바) 세전손익
- (사) 법인세 또는 소득세
- (아) 당기순손익
- (2) 비영리법인·단체는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며, 운영성과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하다.
- (가) 일정 기간 동안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 (나)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 (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

수익과 비용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 34. 사업수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가) 공연수익
- (나) 전시수익
- (다) 아카데미수익
- (라) 기념품판매수익
- (마) 식음료수익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 (바) 협찬금수익
- (사) 국고보조금수익
- (아) 지원금수익
- (자) 회원수익
- (차) 기부금수익
- (카) 이 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어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하다.

- **35.**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가능하고 가득과정이 완료된 때 인식한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 (가) 공연수익과 전시수익은 티켓 판매 시점이 아닌 입장 시점에 인식한다. 즉 공연 및 전시 취소 또는 환불은 수익 인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기념품·프로그램판매수익 및 식음료수익은 기념품·프로그램 및 식음료가 판매될 때에 인식하다.
- (다) 협찬금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인식한다.
- (라) 국고보조금수익과 지원금수익은 일정기간동안 단체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특정 공연 및 전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공연 및 전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마) 일반회원수익은 회비납부가 강제적인 경우 발생주의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취 시점에 인식한다.
- (바) 관극회원수익은 기간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되 이용권의 형태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 인식한다.
- 36. 성격별 분류의 사업비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별 분류에 의하여 원가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면, 성격별 분류의 비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가) 종업원급여
- (나) 재고의 변동
- (다) 홍보비

- (라) 감가상각비
- (마) 무형자산상각비
- (바) 지급임차료
- (사) 소모품비
- (아) 지급수수료
- (자) 기타
- 37. 공연 및 전시가 개시되기 전에 지출된 제작원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공연 횟수 및 전시 일수 기준에 의한 진행률에 따라 공연비용 및 전시비용으로 대체한다. 이는 성격 별 분류 상 '재고의 변동'에 해당하다.
- 38. 사업외수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이자수익
- (나) 유형자산처분이익
- (다) 투자자산처분이익
- (라) 프로젝트투자수익
- (마) 프로젝트투자손실보전수익
- (바) 외화환산이익
- (사) 전기오류수정이익
- (아) 기타
- (자) 이 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9. 사업외비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이자비용
- (나) 유형자산처분손실
- (다) 투자자산처분손실
- (라) 박물관·미술관자료손상비용
- (마) 프로젝트투자손실
- (바) 프로젝트투자이익분배금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 (사) 외화환산손실
- (아) 전기오류수정손실
- (자) 기타
- (차) 이 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잡손실로 분류할 수 있다.
- 40. 티켓, 프로그램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한다.
- 41. 기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수령할 때에는 회수시점에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고 기부금을 현물로 수령할 때에는 현물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인식한다.
- 42.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수익 또는 지원금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자산취득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순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상한 후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 상각, 처분할 때에 관련 손익과 상계처리한다.

▋현금흐름표

43.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단, 비영리법인이 수지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수지계산서를 이용하여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초 현금에서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본변동표 또는 순자산변동표

- 44. 자본변동표의 작성과 표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순자산변동표에는 순자 산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 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을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 (가) 운영성과에 의한 순자산변동
- (나) 순자산조정의 각 항목

▮공시

- **45.** 다음과 같이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 (가) 일반적인 회계정책
- (나) 수익인식기준
- (다)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등
- (라) 투자자산의 인식 및 측정 등
- (마)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 (바)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 (사)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등
- (아) 사용제한예금 및 담보설정자산
- (자) 기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46.** 협찬금수익과 국고보조금수익, 지원금수익이 중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가) 협찬금수익은 해당 공연 또는 전시명, 협찬처, 협찬금액
- (나) 국고보조금수익은 국고보조목적(특정 공연 또는 전시 지원, 단체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기간, 국고보조금액
- (다) 지원금수익은 지원목적(특정 공연 또는 전시 지원, 단체 운영 지원 등), 지원처, 지원 기간, 지원금액

▮시행일

- ▋경과조치
- ■적용사례

사례 1. 재무상태표(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예시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기업명 (단위 : 원)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	×× ×××
당좌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단기투자자산	×××	×××
매출채권	×××	×××
선급비용	×××	×××
이연법인세자산	×××	×××
	×××	×××
재고자산	×	×× ×××
전시도록	xxx	×××
기념품	×××	×××
미완성공연물 및 미완성전시물	×××	×××
	×××	×××
비유동자산	×	×× ×××
투자자산	×	×× ×××
	×××	×××
장기투자증권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유형자산	×	×× ×××
토지	×××	×××
ㅡ , 건물	×××	×××
 (-) 감가상각누계액	(×××)	(×××)
건설중인자산	×××	×××
공연용장비·장치 및 전시용장비·장치	Xxx	×××
(-) 감가상각누계액	(xxx)	(×××)
악기	×××	×××

과 목	당 기		전	기
(-) 감가상각누계액	(×××)		(×××)	
박물관·미술관자료	×××		×××	
건설중인 공연용자산 및 전시용자산	×××		×××	
	×××		×××	
		×××		×××
무형자산	×××		×××	
영업권	×××		×××	
사용수익권	×××		×××	
·····				
フローローク テェレル	~~~	×××	~~~	×××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 ×××		××× ×××	
	***		^ ^ ^	
ㅏ 산 총 계	_	×××		×××
	_			
ᅫ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		×××	
매입채무	×××		×××	
반환예정보조금	×××		×××	
미지급비용	×××		×××	
이연법인세부채	×××		×××	
	×××		×××	
비유동부채		×××		×××
사채	×××		×××	
전시차입금	×××		×××	
	×××		×××	
장기차입금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프로젝트투자예수금	×××		×××	
이연법인세부채	×××		×××	
	×××		×××	
¹ 채 총 계		×××	=	×××
· 본				
자본금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보통주자본금	×××	×××	
우선주자본금	×××	×××	
자본잉여금	×××		×××
주식발행초과금	×××	×××	
	×××	×××	
자본조정 	×××		×××
자 근도 8 자기주식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	×××	
법정적립금	×××	×××	
임의적립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자 본 총 계	×××		xxx
부채 및 자본 총계	×××		×××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법인·단체명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	×	×××
당좌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단기투자자산	×××	×××	
매출채권	×××	×××	
선급비용	×××	×××	
이연법인세자산	×××	×××	
	×××	×××	
재고자산	××	×	×××
 전시도 록	×××	×××	
기념품	×××	×××	
미완성공연물 및 미완성전시물	×××	×××	
	×××	×××	
비유동자산	××	×	×××
투자자산	××	×	×××
투자부동산	×××	×××	
장기투자증권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유형자산	××	×	×××
토지	×××	×××	
건물	×××	×××	
(-) 감가상각누계액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건설중인자산	×××	×××	
공연용장비·장치 및 전시용장비·장치	×××	×××	
(-) 감가상각누계액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악기	×××	×××	
(-) 감가상각누계액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과	목	당 7	'	전	기
박물관·미술관자료		×××		×××	
건설중인 공연용지	산 및 전시용자산	×××		×××	
		×××		×××	
무형자산			×××		×××
영업권		×××		×××	
사용수익권		×××		×××	
•••••			×××		×××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		×××	
		×××		×××	
다 산 총 계		_	×××		×××
쿠 채		=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	×××	×××
매입채무		×××		×××	
반환예정보조금		×××		×××	
미지급비용		×××		×××	
이연법인세부채		×××		×××	
		×××		×××	
비유동부채			×××		×××
사채		×××		×××	
전시차입금		×××		×××	
공연차입금		×××		×××	
장기차입금 티지크성추다비비		×××		××× ×××	
퇴직급여충당부채 프로젝트투자예수금	-	***		×××	
		×××		×××	
		×××		×××	
부 채 총 계			×××		×××
는 자 산					
기본순자산			×××		×××
기본재산		×××		×××	

순자산조정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국고보조금	×××	×××
	×××	xxx
적립금 및 잉여금 운영차액누계액	×××	x xxx
순 자 산 총 계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XXX	×××

사례3. 손익계산서(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예시

손 익 계 산 서

제 \times 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부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까지 제 \times 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부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까지

<mark> </mark> 업명				(5	단위 : 원)
과 목		당 7	<u>'</u>	전	선 기
영업수익			×××		×××
입장료수익		×××		×××	
프로그램판매수익		×××		×××	
식음료판매수익		×××		$\times \times \times$	
대관룍수잉		×××		×××	
기부금수익		×××		×××	
기타의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		×××
조어이그서		×××		~~~	
종업원급여 재고의 변동		× × × ×		××× ×××	
제도의 단당 홍보비 감가상각비		×××		×××	
		×××		×××	
무형자산상각비		×××		$\times \times \times$	
		×××		×××	
기타비용		×××		×××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		×××
영업외수익			×××		×××
이자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투자자산처분이익		×××		×××	
외화환산이익		×××		×××	
프로젝트투자손실보전수	익	×××		×××	
국고보조금수익		×××		×××	
		×××		×××	
영업외비용			×××		×××
이자비용		×××		×××	

과 목	당 기	전 기
유형자산처분손실	×××	×××
투자자산처분손실	×××	×××
외화환산손실	×××	×××
프로젝트투자이익분배금	×××	×××
	×××	xxx
법인세(소득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xxx

사례4. 운영성과표(비영리법인·단체) 예시

운영성과표

제 2 기 201X년1월1일부터 201X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1X년1월1일부터 201X년12월31일까지

단체명

			(단위:원)
	<u>당 기</u>	<u>전 기</u>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			
사 업 수 익:			
입장료수익	XXX	XXX	
프로그램판매수익	XXX	XXX	
식음료판매수익	XXX	XXX	
대관료수익	XXX	XXX	
기부금수익			
	XXX	XXX	
합 계	XXX	XXX	
사 업 비 용:			
종업원급여	XXX	XXX	
재고의 변동	XXX	XXX	
홍보비	XXX	XXX	
감가상각비	XXX	XXX	
무형자산상각비			
	XXX	XXX	
기타비용	XXX	XXX	
합 계	XXX	XXX	
사 업 이 익(A)	XXX	XXX	

사 업 :	외 수 익:		
	이자수익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외화환산이익	XXX	XXX
	프로젝트투자손실보전수익	XXX	XXX
		XXX	XXX
	기타사업외수익	XXX	XXX
	합 계(B)	XXX	\underline{XXX}
사 업 '	외 비 용:		
	이자비용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외화환산손실	XXX	XXX
	프로젝트투자이익분배금	XXX	XXX
		XXX	XXX
	기타사업외비용	XXX	XXX
	합 계(C)	XXX	<u>xxx</u>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프로그램수행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유형자산취득에 따른 제약의 해제	XXX	XXX
	시간제약의 경과	XXX	XXX
	합 계(D)	XXX	XXX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X=A+B-C+D)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지원금수익

XXX

XXX

-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Y)	[xxx]	[xxx]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수익	XXX	XXX
기타수익	XXX	XXX
[여그저 제야이 이느 스자사이 즈가기기	[vvv]	[vvv]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Z)	[xxx]	[xxx]

사례5. 순자산변동표(비영리법인·단체) 예시

순 자 산 변 동 표

제 \times 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부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까지 제 \times 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부터 $20\times\times$ 년 \times 월 \times 일까지

법인·단체명			(단위 : 원)
구 분	기본순자산	순자산조정	운영차액누계액	총 계
20××.×.×(전기초)	×××	×××	×××	×××
운영차액			×××	×××
국고보조금 상각		(×××)		(×××)
20××.×.×(전기말)	×××	×××	×××	×××
20××.×.×(당기초)	×××	×××	×××	×××
전기오류수정	(×××)	(×××)	(×××)	(×××)
수정후 자본	×××	×××	×××	×××
기본재산 출연	×××			×××
운영차액			×××	×××
국고보조금 상각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국고보조금 수령		×××		×××
20××.×.×(당기말)	×××	×××	×××	×××

사례6. 현금흐름표(수지계산서를 이용한 직접법) 예시

현금흐름표

제 2 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까지 제 1 기 20×1년1월1일부터 20×1년12월31일까지

	<u>당 기</u>	<u>전 기</u>
사업활동 현금흐름	ххх	ж
사업활동 현금유입	XXX	ж
제약이 없는 기부금의 유입	XXX	XXX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부금의 유입	XXX	XXX
(단, 현금성기금자산 또는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에		
포함될 기부금의 유입은 제외)		
회비의 유입	XXX	XXX
이자 및 배당금 유입	XXX	XXX
재화 및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현금	XXX	XXX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에 따른 유입	XXX	XXX
기타의 사업활동 현금유입	XXX	XXX
사업활동 현금유출	(xxx)	(xxx)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한 급여 등 유출	(xxx)	(xxx)
이자 등 금융비용의 지급	(xxx)	(xxx)
재고자산과 용역 등의 구입에 따른 유출	(xxx)	(xxx)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에 따른 유출	(xxx)	(xxx)
기타의 사업활동 현금유출	(xxx)	(xxx)
투자활동 현금흐름	ж	ххх
투자활동 현금유입	XXX	ж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의 감소	XXX	XXX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XXX	XXX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 감소	XXX	XXX
유형자산의 처분	XXX	XXX
투자활동 현금유출	(xxx)	(xxx)
단기투자자산(*1)의 취득	(xxx)	(xxx)
현금성기금자산의 증가	(xxx)	(xxx)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xxx)	(xxx)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용자산의 증가	(xxx)	(xxx)
유형자산의 취득	(xxx)	(xxx)
재무활동 현금흐름	хох	ж
재무활동 현금유입	XXX	XXX
영구기금자산과 시한기금자산에 포함될 기부금의 유입	XXX	XXX
유·무형자산취득에 사용될 기부금의 유입	XXX	XXX
단기차입금의 차입	XXX	XXX
장기차입금의 차입	XXX	XXX
재무활동 현금유출	(xxx)	(xxx)
단기차입금의 상환	(xxx)	(xxx)
장기차입금의 상환	(xxx)	(xxx)
현금의 증가	хох	хох
기초 현금	XXX	<u> </u>
기말 현금	ж	ж

제 6 장 1 결 론

- 문화예술계 안팎의 변화로 인해 문화예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영역 전반에서 예술의 공공성과 상업성, 영리와 비영리의 개념을 떠나 재무정보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영역에서 재무정보는 이러한 수요증가와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재무정보의 작성 및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문화시설 운영단체가 재무 및 회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회계처리가 미숙하여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이 미약한 편이다.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단체는 그 법적형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단체 자체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임의단체 또는 영세 개인사업자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재무보고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하고 있더라도 해당 단체의 내부관리 목적으로 현금흐름과 관련한 사항만을 정리하여 단체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기 위한보고서 작성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즉, 회계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또한 단체 자체의 내부규정을 갖춘 경우라 할지라도 각 단체의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회계처리기준이 실무자의 편의에 따라 바뀌거나, 내부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을 혼용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단체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건전성,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성·보고된 재무정보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및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못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는 관리 정도에 있어서 편차가 크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회계인력이 따로 있지

도 않은 곳도 수없이 많다. 이번 연구에서 문화예술단체 중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타 문화예술단체에 비해 비교적 조직의 형태가 잘 갖춰져 있고, 회계담당 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의 범위가 문화시설 운영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 어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적정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적합한 별도의 회계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여 나아가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바람직한 회계시스템 구축의 초석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른 회계 및 재무제표 작성 목적과 문화시설 분야 재무제표의 기본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있어서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차례 실무자 자문회의(문화시설 운영단체회계업무 종사자, 관련 협회 종사자 등)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화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회계기준과의 차별점을 파악하여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회계처리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적합한 회계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회계이슈 및 회계기준(안)>

회계이슈	내용	회계기준(안)
적용대상	문화시설의 법적형태 및 장 르와 업종이 다양함.	영리조직(개인사업자 포함)과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를 적용대 상으로 함.
재무제표의 구성 과 표시방법	모든 법적 형태의 문화시설 운영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법적 형태별로 재무제표의 구성과 표시방 법이 달라져야 함.	영리조직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법 인과 상장 영리법인은 해당 법에 따름. 비영 리조직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 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기본재무제표로 함.

회계이슈	내용	회계기준(안)
재고자산	문화시설의 경우 전시나 공연의 사전 제작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전시나 공연의 티켓이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음.이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박물관 및 미술관은 준비 중인 전시회와 관련된 지출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전시 기간 동안 전시비용으로 대체하고, 공연장 역시 공연 제작비용을 공연 개시 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공연기간 동안 공연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한 도록이나 프로그램 역시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트숍 및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아트숍 판매용 상품 및 제품과 카페테리아재료 등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함.
유형자산	소장 및 무료배포 목적의 도록은 금액적 중요성이 적 을 뿐 아니라 자산화 요건 을 갖추지 않은 것이 일반 적임.	지료 중도 제고적인으로 개공되어야 됨. 도록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어 소장 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도록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처분할 경우 대가를 충 분히 수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구입, 수증, 발굴, 교환 등 취득한 유물을 '박
유물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소 장품, 유물, 수집품 등을 재 무제표에 자산 표시하지 않 는 경우가 종종 있음.	무합, 구흥, 물놀, 교된 등 귀득한 유물을 작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과자료의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장부가액에가산하고, 보존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 비용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임.

회계이슈	내용	회계기준(안)
공연장비	공연장의 무대장비나 공연 장비는 유형자산 하위 계정 의 기계장치나 비품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연장비는 '공연장비', 피아노 등은 '악기'라는 계정과목을 유형자산의 하위 계정으로 기계장치나 비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준계 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무대소품이나 세트장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가 많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무대의상은 재사용이되는 경우도 많지만 개별자산 별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당기 비용으로처리하는 것도 무방함.
선수수익	박물관 및 미술관과 공연장이 대관을 하고 대관 일정보다 대관료를 미리 수취한때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경우 대부분 현금주의에의하여 수취한 시점에 전액수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음. 이는 발생주의에 위배됨.	기중에 대관 일정이 끝나면 수취한 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여도 되지만 대관 일정이 결산일에 걸쳐 있다면, 결산 시점에 남은 대관 일수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의 전시 및 공연일정 시작 전 티켓 판매수입은 전시 및 공연전 환불이 가능하므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한 시점까지 수익인식을 보류하여야함.
국고보조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는 단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는 오히려 재무제표 표시가 왜곡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출연금수익이나 보조금수익으로 하여 수익 인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취득 목적의

회계이슈	내용	회계기준(안)
이용권 판매수익	이용권 판매 시점에 현금주 의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가 많음.	일반적으로 기간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되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함.
원가 배분 여부	흔히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 손익계산서 를 표현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추세는 '기능별분류법'이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성격별 분류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문화시설 운영단체 회계처리기준에서는 효 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성격별 분류를 원칙 으로 하되 기능별 분류에 의하여 손익계산 서를 작성한 경우 주석으로 성격별 분류를 표시하도록 함.
보조금수익 등의 분류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보조금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문화예술단체 중 이를 채택 및 준용하여 영업외수 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 있음.	기업회계기준해석이 개정되어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으로도 분류 가능함. 따라서 문화시 설 운영단체의 국고보조금수익은 사업수익 으로 분류하되, 문화예술서비스와 무관하게 인건비 지원을 받는 등 영업과 무관하게 받 는 경우에는 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함. 기부금수입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 상 표 준계정과목 분류는 영업외수익으로 되어 있 지만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기부금수입은 사 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주요한 수입 원천이므로 영업수익으로 분류 함.
반환할 보조금의 표시	일부 단체는 반환할 보조금 을 해당 보조금수입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용의 하위 계정 으로 비용으로 표시하는 경 우도 있음.	해당 보조금수입의 반납예정액이므로 수익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되 당해연도에 인식한 보조금수입이 아닌 당해연도 이전에 인식한 보조금수입에 대한 반납액일 경우에는 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경우모두 상대계정은 미지급반환금으로 하여 미지급금과는 별도로 부채 표시하도록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기준(안)이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 관된 잣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경험을 가진 회계전문가와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회계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산업 및 단체의 특성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많은 장르 및 업종을 가진 문화예술단체 중 문화시설 운영단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포괄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법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다 보니 되도록 통일된 재무제표를 제시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영리와 비영리와 이원화되었다.

●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적합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영리든, 비영리든 각 문화시설 운영단체의 회계정보의 투명성, 유용성,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 지는 작업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화시설 운영단체에 적합한 표 준화된 공통의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정보를 작성·보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단체 운영의 건전성과 통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200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일반기업회계기준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공연예술 실태조사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0 미술시장 실태조사
- 배길수, 정석우, 박충환,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작성기준", 연구보고서 제4호, 한국회계 연구원, 2000
- 이근수, 이성호, "문화예술단체의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15호, 한국회계연구원, 2004
- 김진영, "공연예술단체의 바람직한 회계기준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예술 경영대학원, 2004
- 최성철, "비영리조직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 최해수,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 정용근, "우리나라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학연구 제9호, 2001

http://dart.fss.or.kr/

https://npoinfo.nts.go.kr/

www.museum.or.kr

www.getty.edu/museum/

www.lct.org

www.esplanade.com

www.moma.org

www.strazcenter.org

www.shubertorganization.com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발행일 : 2012년 1월 30일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7 대학로예술극장 B1/B2

전 화: 02-708-2249

홈페이지 : www.gokams.or.kr

디자인 · 인쇄 : 메인기획

※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